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슬로바키아

I .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슬로바키아 공화국(Slovak Republic)
면적	49,034 km ² (자료원 : 슬로바키아 통계청, 2022년 9월)
수도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민족(인종)	
언어	슬로바키아어
종교	가톨릭(62.0%), 개신교(5.9%), 희랍정교(3.8%), 무교(13.4%), 기타(14.9%)
기후	○ 사계절이 뚜렷한 대륙성 기후이며 간헐적으로 지중해의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 기후 - 연평균 기온은 9~10도이며, 여름은 6월부터 8월까지, 평균 기온 18도, 최고 기온은 37~40도이고 겨울은 12월부터 1월까지, 평균 기온은 영하 3도, 최저 기온은 영하 12~20도 수준이다. - 연평균 강우량은 530mm로 강우일은 월 5~9일 정도이며, 가을철(10~11월) 일교차가 심하다. ○ 슬로바키아는 유럽국가 중 알프스 산맥을 포함한 국가들 다음으로 산지가 많은 지형으로 강우량이 지형의 영향을 받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 갈란타(Galanta 지역, 연평균 483mm)부근의 다뉴브 평야에서 가장 낮으며, 연간 총 강우량이 2,130mm에 이르는 높은 산(타트라 산맥)에서 가장 높은 강수량이 발생함 - 강설량은 연간 총 강수량의 약 20%이며 고도가 높아지면 타트라(Tatras) 능선에서 70%까지 상승함. 만년설은 타트라 산맥에서 200일 이상, 다뉴브 저지에서 40일 동안 지속됨
국가원수	○ 대통령: 주자나 차푸토바(Zuzana Caputova) (2019. 6.15. 취임) ○ 국무총리: 에두아르트 헤게르(Eduard Heger) (2021. 4.1. 취임)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국교 수립일

1993-01-01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사증 면제 협정	1995-07-15	사증 면제에 관한 교환 각서	
소득세 이중과세 방지 협정	2003-07-08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협약	
투자협정	2006-02-07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운전면허 협정	2007-11-23	운전면허 상호 인정 및 교환을 위한 교환 각서	
문화교류 협정	2007-11-27	문화 교육 및 관광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사회보장세 협정	2010-03-01	사회보장세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협정	
과학기술 협정	2014-04-02	과학기술 협력 협정	
경제협정	2017-06-01	경제 협력을 위한 협정	

한국교민 수

1,493 명 (자료원 : 슬로바키아 인권기구(www.hrl.sk) (2021 기준 최신자료))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 경제나 정치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커다란 이슈는 없으나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이 슬로바키아에 많이 진출하면서 슬로바키아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는 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 높으며, 주요 외국인 투자국으로 긍정적인 편이다.
- 2017년 양국 국회의장의 상호 방문을 계기로 양국 의회 간 교류 활성화되었고, 한-슬의원친선협회가 7월에 결성되었다.

- 2018년 4월 10~12일에 역사상 최초로 한-슬 정상 회담이 있었다. 당시 키스카 대통령은 "슬로바키아에는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며 한국과 슬로바키아가 서로에게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양국 간 협력을 당부했다.
- 2019년 양국 정부 고위인사들은 여러 방면에서 교류를 확대하였다. 카지미르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1월에 OECD 의장국(슬 의장국, 한국·캐나다 부의장국) 협의회 방한하였고, 지가 경제부 장관이 3월, 한국의 대슬 투자(전기차 배터리 공장 등) 협의회 방한하였으며, 야쿠보치 외교부 정무차관보가 3월에 한-V4 정무차관보 회의 참석하였다. 한편 강경화 외교장관이 6월에 슬로바키아에서 개최된 GLOBSEC 포럼, 한-V4 외교장관회담에 참가하였으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9월 단코 국회의장과 의원교류 활성화 회의 참석차 방문하였다.
- 2021년 우리 정부는 V4(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협력기금(IVF: International Visegrad Fund) 지원의 일환으로 2021년 중 동방파트너십 지역의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의료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2021년 11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은 헤게르 슬로바키아 총리와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한-V4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 사태, 녹색전환 및 혁신분야의 상호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하는 등 양자회담을 개최하였다.

경제

- 한국인 체류자가 증가함에 따라 슬로바키아에 주재하는 한국인들의 현지 정착 및 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이 상호 협정을 통해 완만히 해결되고 있다.
- 본사 파견 한국 직원에 대한 사회보장세 납부 문제와 관련한 사회보장협정은 2010년 3월 한국 국회의 비준이 완료돼 발효됐고 2011년 7월 1일부로 한-EU FTA가 발효되었다.
- 슬로바키아에 삼성전자 및 기아자동차 생산법인이 진출하여 경제의 산업생산의 큰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이 완화되는 단계인 2020년 5월부터 기아자동차의 생산 제품 변경을 위한 기술지원단의 입국을 슬로바키아 경제부에서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 경제협력 지속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슬로바키아 정부 측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 2021년 11월 개최된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에서 헤게르 총리는 "1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슬로바키아에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 중이며, 한국은 슬로바키아의 5번째 큰 투자국이자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임. 향후 e-모빌리티, 수소모빌리티, 로봇화, 배터리 생산 및 반도체 부품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한국의 첫 전기자동차를 슬로바키아에서 맞이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삼성전자 슬로바키아 공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상업용 마이크로 LED 수요가 큰 폭으로 늘자 2022년 1월에 마이크로 LED를 추가로 생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현지에서 설비 증설 이후 2022년 5월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문화

- 슬로바키아는 지리적 위치상 중유럽 문화권(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와 유사한 문화)에 속하며 역사적으로는 과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 속하여 이 시기의 많은 유적이 남아있다. 인종은 슬라브인에 속하며, 이와 연관된 언어 역시 슬라브 어군에 속해 폴란드, 체코,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언어와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종교적으로는 대다수가 가톨릭이어서 교회가 많으나 대부분의 사람이 주기적으로 교회를 방문하여 종교활동을 하기보다는 결혼 등 예식에 종교적인 서약 등이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 한류의 영향은 서유럽이나 폴란드와 비교하여 크지 않다. 수도 내의 전통 한식당이 1개소인 점, 한국 가수의 공연이 열리지 않는다는 점, 한국 화장품 또는 연예인과 연관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슬로바키아의 한류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슬로바키아의 명문 대학 코메니우스(Univerzita Komenského)대학에 2012년에 한국학과가 개설되었고, 슬로바키아 젊은 층이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를 공유하는 콘서트인 한국콘(Hanguk-con)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만큼 앞으로 슬로바키아 내의 한류의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양국이 2007년 문화협정 체결 이후,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증진해 오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한-슬로바키아 친선음악회가 슬로바키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으로 브라티슬라바에서 지난 몇년동안 개최된 바 있어 양국 문화교류의 모범적 사례로 볼 수 있다.

○ 유럽 최초로 슬로바키아의 공립극장 노바스체나(Nova Scena)에서 한국의 뮤지컬 투란도트를 수입하여 프리미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연기 된 후 슬로바키아 내 뮤지컬 투란도트가 2021년 10~11월에 공연되었다.

○ 2021년 11월 개최된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상은 양국간 한-슬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곧 체결되어 청년 교류 및 상호 이해가 더욱 촉진되기를 바랐으며, 슬로바키아 내 K-팝의 인기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설립된 세종학당을 통해 양국 간 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2년 6월 주슬로바키아 대사관은 한국 유학 경험이 있는 슬로바키아인 초청 행사를 개최하고, 한국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 유학 경험자들이 동문회를 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	3.8	2.3	-5.2	3	
명목GDP (십억\$)	105.75	105.09	104.09	107.21	
1인당 GDP (PPP, \$)	32,820	34,140	32,710	35,118	
1인당 명목 GDP (\$)	19,430	19,280	19,070	21,606	
정부부채 (% of GDP)	49.9	48.5	60.7	63.1	
물가상승률 (%)	2.5	2.8	2	3.1	
실업률 (%)	6.5	5.8	6.7	6.8	
수출액 (백만\$)	93,424	89,512	86,099	103,528	
수입액 (백만\$)	92,900	90,003	84,459	103,429	
무역수지 (백만\$)	524	-491	1,640	99	-
외환 보유고 (백만\$)	3,972.9	5,666.15	6,513.21	8,489.6	
이자율 (%)	0	0	0	0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1.15	1.13	1.21	1.18	

<자료원 : IMF>

나. 경제 동향

○ 슬로바키아는 2021년에는 3%의 GDP 성장을 이루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제외하면 2014년부터 연평균 3% 수준으로 대외경제 개방 이후 21년까지 꾸준한 성장을 이룩했다.

○ 슬로바키아 주요 경제 성장 요인에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서유럽과의 경제적 연결성, 낮은 실업률, 순수출의 증가를 꼽을 수 있

다.

○ 슬로바키아 노동시장은 2021년 실업률은 코로나19로 인해 상승한 6.8% 수준으로 산업이 발달한 수도 브라티슬라바 및 서부 슬로바키아 도시들은 4%의 자연실업률 수준을 보였다.

○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슬로바키아의 월 최저임금은 646유로로 2021년 623유로에서 약 3.6% 상승하였다.

○ 2021년 6월 부동산 가격 관련 전문가들은 작년 중 슬 주택가격이 12% 상승하였으며 금년 1/4분기에는 15% 이상 상승하였다면서, 향후 2~3년 내 일반 서민들이 아파트를 구입하기 힘들 정도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주택가격 상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규주택 건설 중단 및 건축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2021년 12월 마토비취 재무장관의 2022~2024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참석의원 146명 중 찬성 91표, 반대 52표, 기권 3표로 승인됨. 2022년, 2023년 및 2024년의 재정적자는 각각 슬 GDP의 4.94%, 2.7% 및 0%로 편성됨. 내년 정부수입은 442억 유로, 지출은 494억 유로로 편성되었으며, 2021~2022년 국가부채는 GDP의 61.5%일 것으로 예상했다.

○ 2022년 3월 국제신용평가사 Fitch는 슬로바키아의 국가신용등급을 A(안정적)로 평가한 바, 2020.5월 이후 큰 변화는 없는 상황. 이는 슬로바키아의 수출 경쟁력, 안정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및 국가부채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급격한 인플레이션, 러시아에 대한 높은 에너지 의존도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공재정 압박이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 2020.5월 A(안정적), 2020.11월 A(부정적), 2021.4월 A(부정적), 2021.10월 A(안정적), 2022.3월 A(안정적)

○ 슬로바키아자동차산업협회 Jan Pribula 사무총장은 슬로바키아 내 상반기 자동차 생산량이 520,000대라고 밝히며 금년에도 연간 백만 대 이상을 생산하여 국민 1인당 자동차 생산 1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2022년 7월 자동차 판매량은 6,221대로 전년 동기 대비 28% 이상 감소하였고, 점유율 1위는 Skoda(18.3%), 2위는 기아(13.9%), 3위는 현대(12.7%) 순으로 집계된다.

다. 경제 전망

○ 슬로바키아는 소규모 대외개방 경제 모델로 10년 이상 꾸준한 경제성장을 보이며 2019년 2.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후,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5.2%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제조업 중심 경제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조속히 벗어나 2021년에 3.2%, 2022년에는 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1년 6월 경제성장률과 관련하여 슬 경제 전문가들은 작년 중 슬 경제 하락 폭이 컸던 만큼 금년에는 반등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산업분야에 이은 서비스분야 정상화로 국내소비가 살아나고 있어서 금년 중 4% 성장세를 예상했다. 한편, Slovenska Sporitelna사 전문가는 슬 경제가 해외수요에 크게 영향을 받음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의 지속 여부에 따라서 일정 부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하고, 경제회복은 국내외의 백신접종 상황에 달려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 2021년 12월 슬 정부는 EU 복구기금 이행에 대해 논의 · 권고할 수 있는 정부 내 EU 복구기금 위원회 설립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 슬 고용주협회 중 하나인 Club 500은 동 위원회에 민간기업 대표자가 부족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슬 상공회의소, 고용주협회 등이 포함되도록 요청하였다.

○ 2022년 6월 OECD 경제전망치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2022년 2.3%, 2023년에는 3.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이슈로는 EU펀드 투자금 유입, 러우전쟁 장기화 및 에너지 수급 문제, 높은 인플레이션 등이 있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20,927,106,572
2	체코	11,028,071,517
3	폴란드	7,212,657,099
4	프랑스	6,001,065,735
5	헝가리	5,677,658,965
6	이탈리아	5,446,917,127
7	오스트리아	5,443,774,324
8	영국	4,217,466,722
9	미국	3,244,714,923
10	스페인	2,726,419,153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19,910,585,343
2	체코	9,929,834,360
3	폴란드	6,777,481,454
4	프랑스	6,363,791,343
5	헝가리	5,824,261,839
6	오스트리아	5,156,627,159
7	영국	4,410,699,911
8	이탈리아	4,235,727,745
9	미국	2,930,673,333

10	스페인	2,578,145,630
----	-----	---------------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19,094,972,186
2	체코	9,149,482,496
3	폴란드	6,876,947,288
4	프랑스	6,345,624,555
5	헝가리	5,559,208,538
6	오스트리아	4,794,742,016
7	영국	3,836,840,296
8	이탈리아	3,811,875,743
9	미국	3,332,928,739
10	중화인민공화국	2,402,688,355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16,854,528,801
2	체코	10,259,284,762
3	Other Europe, nes	6,618,509,513
4	중화인민공화국	5,548,281,544
5	대한민국	5,508,090,500
6	베트남	5,443,638,513
7	폴란드	5,438,292,111
8	러시아	5,404,118,692
9	헝가리	4,484,350,152
10	이탈리아	3,269,856,455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15,210,157,587
2	체코	10,025,987,804
3	Other Europe, nes	6,812,277,839
4	중화인민공화국	5,787,841,104
5	폴란드	5,540,958,132
6	러시아	5,000,262,691
7	대한민국	4,955,134,254
8	헝가리	4,945,682,472
9	베트남	4,724,176,620
10	프랑스	3,301,377,939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15,845,678,223
2	체코	8,993,506,315
3	Other Europe, nes	7,731,089,026
4	중화인민공화국	5,724,632,414
5	폴란드	5,126,146,984
6	베트남	4,272,441,465
7	대한민국	4,234,028,321
8	헝가리	3,985,513,326
9	러시아	3,958,230,087
10	프랑스	3,352,600,303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9,104,134,402
2	852872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5,168,055,669
3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688,807,683
4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4,001,729,709
5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3,541,660,906
6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3,276,253,743
7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1,545,056,024
8	870829	기타	1,488,325,164
9	851220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1,142,862,420
10	401120	버스용 · 화물차용	982,668,177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8,228,630,428
2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4,983,113,600
3	852872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4,694,842,963
4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757,344,975
5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2,951,528,999
6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2,687,060,902
7	870829	기타	1,703,087,621
8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1,251,331,276
9	851220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1,116,556,233
10	870350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1,114,725,128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6,641,415,790
2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4,305,771,238
3	852872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4,125,961,499
4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607,356,748
5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2,821,764,166
6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2,658,945,812
7	870380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2,128,106,878
8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690,153,332
9	870829	기타	1,304,663,006
10	87036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1,277,631,863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5,546,583,859
2	870829	기타	4,121,963,709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762,668,095
4	852990	기타	2,175,094,300
5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1,779,454,039
6	271121	천연가스	1,751,689,016
7	271600	전기에너지	1,550,056,771
8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 · 항공기용 ·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1,507,432,414
9	940190	부분품	1,497,398,060

10	300490	기타	1,357,520,440
----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829	기타	4,897,115,741
2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655,966,403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293,373,721
4	852990	기타	1,968,363,042
5	271121	천연가스	1,944,354,165
6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1,783,121,598
7	271600	전기에너지	1,627,295,270
8	940190	부분품	1,580,275,017
9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 · 항공기용 ·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1,559,460,266
10	870899	기타	1,498,220,538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829	기타	4,893,759,151
2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967,892,148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839,326,394
4	852990	기타	1,753,647,964
5	300490	기타	1,747,147,071
6	271121	천연가스	1,574,284,620
7	870899	기타	1,511,547,373
8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1,486,114,729
9	271600	전기에너지	1,388,493,366
10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 · 항공기용 ·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1,279,327,884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8	2,719	188	2,531
2019	2,315	500	1,815
2020	2,211	871	1,340
2021	2,836	664	2,172
2022	1,838	490	1,348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1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20	자동차부품	1,262	38	1,224
2	8352	축전지	125	1	123
3	7112	펌프	115	16	98
4	8423	전원장치	51	6	45
5	8151	계측기	48	3	44
6	7111	원동기	100	4	96
7	8361	평판디스플레이	29	1	28
8	8153	자동제어기	64	3	60
9	8422	전동기	50	1	49
10	7512	밸브	37	0	36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2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20	자동차부품	869	46	823
2	8352	축전지	92	0	92
3	7112	펌프	88	14	74
4	8423	전원장치	72	4	68
5	8151	계측기	52	3	49
6	7111	원동기	50	1	49
7	8361	평판디스플레이	44	0	44
8	8153	자동제어기	34	3	31
9	8422	전동기	33	1	32
10	7512	밸브	25	0	25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1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46	421	-376
2	7419	기타자동차	0	0	0
3	7420	자동차부품	1,262	38	1,224
4	7515	전동축및기어	27	28	-1
5	3203	타이어	12	22	-10
6	7112	펌프	115	16	98
7	7902	기타기계류부품	3	9	-7
8	7513	베어링	3	12	-10
9	7290	기타산업기계	53	13	40
10	8269	기타조명기기	29	8	2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2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25	167	-142
2	7419	기타자동차	6	138	-132
3	7420	자동차부품	869	46	823
4	7515	전동축및기어	19	19	0
5	3203	타이어	5	14	-9
6	7112	펌프	88	14	74
7	7902	기타기계류부품	5	8	-3
8	7513	베어링	2	7	-5
9	7290	기타산업기계	19	7	12
10	8269	기타조명기기	17	7	1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화장품		
HS Code	330499	수입액('21/US\$천)	12,084
수입관세율(%)	15	대한수입액('21/US\$천)	55
선정사유	슬로바키아에 한국 화장품 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한국 화장품 수입 수요 증가		
시장동향	니베아, 로레알 등 유럽 브랜드 제품이 시장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산 마스크팩과 중저가 브랜드 기초화장품 시장진입이 증가하고 있음		
경쟁동향	소수의 국가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며 체코(41.48%), 독일(12.98%), 폴란드(10.76%), 스페인(8.51%), 프랑스(7.42%) 순		
진출방안	CPNP 사전 획득 후 바이어 및 디스트리뷰터 발굴, 온라인 유통망을 이용한 브랜드 인지도 극복		
품목명 2	차량용 안마의자		
HS Code	940190	수입액('21/US\$천)	111,429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천)	543
선정사유	차량용 의자시장은 21년 기준 5년 간 인기 지속, 가격은 40-200유로까지 다양함		
시장동향	체코, 독일, 폴란드, 영국이 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아시아산 제품은 미비함		
경쟁동향	루마니아(22.13%), 폴란드(21.53%), 체코(16.30%) 등		
진출방안	유럽 제품에 없는 기능(온도 조절, 압박점 이동 등)을 탑재한 유사가격 모델은 경쟁력 있음		
품목명 3	X-ray 기기		
HS Code	902214	수입액('21/US\$천)	9,696
수입관세율(%)	3	대한수입액('21/US\$천)	614
선정사유	병원 및 의료기기 현대화 프로젝트 관련 X-ray 기기 수입급증		
시장동향	공공 의료시설 현대화와 민간 의료시설 증가로 의료기기 수요 지속 확대 전망		
경쟁동향	독일(28.36%)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네덜란드(23.72%), 벨기에(16.95%), 이태리(8.21%), 대한민국 (6.33%) 순임.		
진출방안	한국산 의료기기 수입경험이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통한 시장 진출 및 A/S 대응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관광산업
선정사유	슬로바키아 관광산업을 국가 주요산업으로 지정하고, EU 기금을 투입하는 등 국가적 육성 전망

시장동향	슬로바키아의 관광산업은 비엔나와 부다페스트를 연계한 상품 및 지방도시의 등산, 스파를 테마로한 상품만이 외국인 관광객에 인기를 얻고 있음
경쟁동향	슬로바키아 관광 프로그램과 더불어 오스트리아·영국 등 서유럽 국가에서 각종 슬로바키아 관광 상품 운영 중
진출방안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상품 개발(차량, 투어, 가이드 등). 특히 슬로바키아 지방도시 프로그램과 헝가리, 오스트리아 연계 프로그램 개발
품목명 2	홈솔루션
선정사유	슬로바키아 관광산업 발전으로 관광객이 증가하여 주요 호텔 및 상업용 건물에 스마트락 도입 수요 증가
시장동향	대략적인 시장규모는 백만 달러로 상업용 건물 또는 고급주택에만 도입되는 추세
경쟁동향	스웨덴의 ASSA ABLOY사 등 유럽 선진국기업이 시장 대부분을 점유
진출방안	IoT기술을 접목한 기술기업은 유럽의 규격에 부합할 경우 규모가 작아도 시장수요에 대응할 수 있음
품목명 3	서비스공유센터
선정사유	슬정부의 전략적 투자유치 분야로 많은 슬로바키아 또는 EU시민이 다수 외국어를 구사하며 근무하는 점이 장점
시장동향	at&t, Amazon, IBM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슬로바키아에서 공유서비스센터(SSC)를 운영 중
경쟁동향	최근 슬로바키아의 실업률이 4%대로 진입한 만큼 인력확보가 가장 큰 관건임
진출방안	글로벌 한국기업들의 서비스센터 및 유럽 지역 관리센터를 슬로바키아에 설치하여 인건비 절감 및 효율적 관리 플랫폼 구축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FTA(Free Trade Agreement)	대한민국	2010-10-06	2015-12-13	2011. 7. 1. 잠정 발효 및 2015.12.13. 전체 발효
A(Agreement)	스위스	1972-07-22	1973-01-01	
CA(Co-operation Agreement)	시리아	1977-01-01		잠정 중단
CU(Customs Union)	안도라	1990-06-28	1991-01-01	산 마리노,모나코,안도라 3개국과 Association Agreement 진행중 (2014.12.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1.12)
CU(Customs Union)	산 마리노	1991-12-16	2002-04-01	산 마리노,모나코,안도라 3개국과 Association Agreement 진행중 (2014.12.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2.12)
EAA(Economic Area Agreement)	아이슬란드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노르웨이	1992-05-02	1994-01-01	
CU(Customs Union)	터키	1995-01-01	1995-12-3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스라엘	1995-11-20	2000-06-01	
AA(Association Agreement)	모로코	1996-02-26	2000-03-01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중 (2013.3.1 협상개시, 2019.6 재추진) 협정 현대화 추진 중 (2021.9 추진)
Updat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르메니아	1996-04-22	2018-06-01	잠정 발효
A(Agreement)	페로 제도	1996-12-06	1997-01-01	

IAA(Interim Association Agreement)	팔레스타인	1997-02-24	1997-07-01	
AA(Association Agreement)	요르단	1997-11-24	2002-05-01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러시아		1997-12-01	2008년 PCA 대체하는 RCA 협상 개시, 2010년 RCA 협상 중단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마케도니아	2001-04-29	2004-04-0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집트	2001-06-25	2004-06-01	
AA(Association Agreement)	알제리	2002-04-22	2005-09-01	
AA(Association Agreement)	레바논	2002-06-17	2006-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알바니아	2006-06-12	2009-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몬테네그로	2007-10-15	2010-05-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세르비아	2008-04-29	2013-09-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8-06-16	2015-06-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카리포럼(CARIFORUM)	2008-10-15	2008-12-29	잠정 발효(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그라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공화국,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IE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카메룬	2009-01-15	2014-01-01	잠정 발효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피지	2009-07-13	2014-07-28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파푸아뉴기니	2009-07-30	2011-05-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동남아프리카(Eastern and Southern Africa)	2009-08-29	2012-05-14	잠정 발효(마다가스카, 모리셔스, 세이셸, 짐바브웨)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라크	2012-05-01	2012-08-01	잠정 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with a strong trade component)	중앙아메리카(central america)	2012-06-29		잠정 발효온두라스, 니카과라, 파나마(2013. 8. 1.)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2013.10.1), 과테말라(2013.12.1)
TA(Trade Agreement)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	2012-07-26		잠정 발효콜롬비아(2013. 8. 1.), 페루(2013. 3. 1.), 에콰도르(2017. 1. 1.)
DC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Association Agreement)	우크라이나	2014-05-29	2016-01-01	잠정 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조지아	2014-06-27	2016-07-01	
AA(Association Agreement)	몰도바	2014-06-27	2016-07-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코소보	2015-10-22	2016-04-01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카자흐스탄	2015-10-26	2016-05-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2016-06-10	2016-10-10	잠정 발효(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모잠비크(2018. 2. 4.))EPA는 기존의 TDCA(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 협정을 대체

Stepping stone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코트디부아르	2016-07-28	2016-09-03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가나	2016-07-28	2016-12-15	잠정 발효
CETA(Compre 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캐나다	2016-10-13	2017-09-21	잠정 발효
PDCA(Political Dialogue and Cooperation Agreement)	쿠바	2016-12-12	2017-11-01	잠정 발효
FTA(Free Trade Agreement)	싱가포르	2018-10-19	2019-11-21	FTA 내 투자분야는 별도로 두고 추 진(현재 투자보호협정 회원국별비준 진행중)
FTA(Free Trade Agreement)	메르코수르(Mercosur)	2019-06-28		양측 체결 합의(2019. 6.28.)메르코 수르 각 회원국별 의회 승인 후 잠정 발효 예정이며, 이후 EU 국별 비준 후 정식 발효 * 메르코수르 회원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 과이
FTA(Free Trade Agreement)	베트남	2018-10-19	2020-08-01	2020. 2. EU비준 및 2020. 6. 8. 베 트남 비준 완료, 2020. 8. 1.부로 FTA발효 (현재 투자보호협정IPA는 회원국별 비준 진행 중)
FTA(Free Trade Agreement)	칠레	2002-11-18	2005-03-01	협정 현대화 추진중 (2017.11.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합의완료 2021. 10. EU의회,이사회 거쳐 최종 승인 계획)
TCA(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영국	2020-12-24	2021-05-01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솔로몬 제도(Pacific)	2011-05-01	2020-05-17	

〈자료원 : EU 집행위〉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	--------	--------	----

TTIP	미국	협상중, 직전 협상 2022.5	EU-미국 무역 및 기술 위원회 TTC 발족(2021.6.15)
FTA(Free Trade Agreement)	뉴질랜드	협상중, 직전협상 2022.6	EU-뉴질랜드 FTA 협상 완료, 향후 이사회 채택 이후 발효 예정
FTA(Free Trade Agreement)	영국	협상 중, 직전 협상: 2020. 6. 1.	2020.12.31. 협상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
Update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제르바이잔	협상중, 직전협상: 2019. 4.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네시아	협상중, 직전협상 2021.11	
FTA(Free Trade Agreement)	호주	협상중, 직전협상 2022.2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	직전 협상 : 2022.6	2021.5.8. 협상 재개 합의
EPCA(Enhanced Partnership Cooperation Agreement)	키르기즈스탄	협상완료, 직전협상 2019.6	EU-키르기즈스탄 EPCA 협상완료, 향후 이사회 채택 이후 발효 예정 (2022년 내)
EPCA(Enhanced Partnership Cooperation Agreement)	우즈베키스탄	협상완료, 직전협상 2022.6	

〈자료원 : EU 집행위〉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물개 제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EU는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4대 분쟁광물(2021년 1월 1일부)

콩고 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 등 4대 광물 수입이 2021년 1월 1일부로 금지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채굴자금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광물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노동착취 등이 발생해 수입금지 통해 유혈분쟁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17년 관련 규정(No. 2017/821)을 제정하고 2021년부터 4대 광물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 대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여 해당제품에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2021년 7월 3일부)

EU의 탈플라스틱 정책에 따라 면봉, 식기류(cutlery), 식품용기, 음료용 컵, 빨대, 풍선막대 등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2021년 7월 3일부로 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전 세계 플라스틱 연 생산량이 1950년 2백만 톤에서 2015년 3.8억 톤 등 190배 증가했으며, 전체 플라스틱의 60% 이상이 자연으로 흡수되는 상황에서 EU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소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집행위는 EU 지침 2019/904를 통해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동 지침은 2019년 7월 2일부로 적용 예정이었으나 2년간의 회원국별 법령 수용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3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들 수 있다.

인증의 경우,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 및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굴삭기, 휠로더, 스kid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들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의 경우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마크, RoHS, REACH, CPNP, e-Mark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E 마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프랑스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CE 마크는 인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고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다만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을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 기기, 의료기기, 선박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되는 세부 품목 리스트는 아래의 EU 집행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E 적용 품목 리스트 링크 :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manufacturers_en

○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용이해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돼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이 가능하다.
- 만약, 필요에 의해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로 표시가 돼야 한다. 이 인식번호 표시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 CE 마크 대리인 규정

2021년 7월 16일 유럽연합은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Regulation (EU) 2019/1020]을 채택했으며 앞으로 CE 마크가 있는 모든 상품은 상품의 규정 준수를 위한 책임자로서 유럽연합 내 거주하는 유럽연합 대리인을 필요로 한다. 유럽연합 내 상품의 규정 준수를 위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유럽연합 내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유럽연합 내 수입업체, 유럽연합 내 대리인, 유럽연합 내 배송 서비스 제공 업체 등이며, 대리인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 상품의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 수집 후 유럽연합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유럽연합 표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별도의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DoC), 기술문서(테스트보고서, 안전 인증서 등)

- 상품이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상품의 규정 미 준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 RoHS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0.1%
- 수은: 0.1%
- 육가크롬: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0.1%
- 카드뮴: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0.1%
-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3) REACH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 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

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 등록 대상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 각각의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고분자 내 2% 이상 포함되어 있고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또는 고분자를 함유한 조제 제품 내 각 성분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사용자, 물질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 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 가능

* 사전등록: 사전 등록은 등록 절차의 하나로, 사전등록을 해야만 함량과 물질특성에 따라 3년 6개월~11년까지 본 등록이 유예된다.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이 마감되었으나,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연간 1톤 이상 수출하는 경우, 최초 수출 후 6개월 이내에 사전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사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톤수별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신고대상

- 완제품에서 고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 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 물질 등록 절차

- 신청 및 제출: 화학물질 D/B 시스템 IUCLID(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내 물질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등록사항: 물질정보(화학물질 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정보 등과 함께 기술서류(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전보고서(Cheical Safety Report)도 제출

· IUCLID 해당 홈페이지 : <http://iuclid.eu>

- 평가 : 서류검증 및 질적 검사

· 물질 등록 서류 제출 후, 서류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검증이 시행되나 이는 모든 요구사항이 등재되었는지의 파악을 위한 단순체크에 불과하다. 유럽물질화학청(ECHA :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등록된 물질정보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물질별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 검사를 통해 등록신청 물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 질적 평가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1회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부터 다시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 ECHA 지원센터 연락처 : +358-9-686180(헬싱키)

- 등록비용 지불 및 승인번호 부여 : 승인 결정 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해당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물질 등록일은 해당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날짜로 지정된다.

- 등록물질 공표 : ECHA는 등록 완료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 공식 웹사이트(www.echa.europa.eu)에 공표한다.

4) CPNP(화장품 인증)

화장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EU 수출에 흔히 사용되는 CE 인증의 경우 화장품 제품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CE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CPNP 제도는 2013년 7월 11일부로 시행중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CPNP 등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뉜다.

- RP 지정 및 라벨링 : 수출기업은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Responsable Person)를 지정하고 필요서류를 RP에 제출하는 한편, EU 기준에 맞는 라벨 작성

- 성분 및 라벨 검토 :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
-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등록 :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 정보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실질적인 CPNP 등록 과정을 살펴보면, 수출기업이 사전 지정한 RP(또는 인증대행사)로 제품 원료별 %가 명시된 전체 성분표를 제출하면 RP가 제품별 테스트를 거친 후 가격 견적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안내해준다. 이후, 수출기업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RP는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 성분을 검토(Formula Review)하고 제품 안전성 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작성한다. 또한,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기업과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친 후 승인한다. 이후 RP는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하고 CPNP 등록시스템 내 등록을 마친다.

RP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품별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제품정보, 제품 시험성적서, 성분 안전성 데이터, 제조번호, 성분표, 원산국명, 제품 출시되는 EU 회원국명, 동물실험 테스트, 방부력 테스트, 안정성 및 적합성 테스트, IFRA 증명서 등이 있다. 제출되는 서류의 언어는 영어 또는 진출하려는 EU 국가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EU 1개국만 바라보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다. 다만,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 개별 표기돼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라벨을 작성할 때 다수의 한국기업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제품효능에 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추가하고 싶어 여러 효과(진정성, 지속성, 주름개선 등)를 제품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들은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CPNP 등록이 가능하므로, 증빙하기 힘든 문구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처음부터 확실한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CPNP 등록을 완료하기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만일 서류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5) e-Mark

e-Mark는 자동차 산업분야에 관련된 EU 적합성 준수 마크로 유럽시장에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 제도이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마킹과 달리, EU 각국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시험 후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ISO 9000을 획득한 제조기업은 생산절차의 적합성이 인정돼 기관의 면밀한 검사 없이 형식승인 획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안전한 제품 제조 여부 확인을 위한 공장시설 및 생산절차 등 현장검사가 시행될 수 있다. 또한, 형식승인이 완료되면 인증 마크와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마크에는 EU 개별국의 고유 번호가 매겨진다. 1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다른 회원국의 별도 승인 없이도 역내 자유로운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 EU 회원국 고유번호 예시 : 1=독일, 2=프랑스, 3=이탈리아, 4=네덜란드, 5=스웨덴, 6=벨기에, 9=스페인, 11=영국, 12=오스트리아, 13=룩셈부르크, 17=핀란드, 18=덴마크, 21=포르투갈, 23=그리스 등

6) 보조금

인증제도 이외에도 EU는 반덤핑 및 반보조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0년 6월 7일, EU 집행위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역외국 기업의 역내시장 경쟁왜곡을 차단하는 규제 백서(White Paper on Foreign Subsidies in the Single Market)를 발표했다. 역외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통한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EU 시장에서 역내 기업들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기업인수, 공공조달 분야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행 제도로는 이들 기업의 규제가 힘들어 보다 강화된 규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이번 백서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규제수단을 도입하며 해당 이해관계자 의견을 2020년 9월 23일까지 수렴했다. 집행위 차원의 내부적 평가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21년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2021년 5월 EU집행위는 기업인수와 공공조달 입찰 시 EU 역외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상황이 발견될 시 EU집행위에 이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하였다.

- 일반(사후규제) : 특정 기업인수 건에 대해 인수자금 및 보조금 내역 사전신고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방안제출 조건부 승인 혹은 기업 인수금지 조치

- 기업인수(사전규제) : EU 내 영업 중인 기업이 과거 3년간 2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저가판매 등 경쟁왜곡 여부를 심사하여 자산매각투자금지 등 금전적 제재 부과. 피인수기업의 EU 지역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이거나 EU 역외 지역 인수기업의 투자자금이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인수건에 대해 EU 역외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정황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공공조달 및 EU 펀딩(사전규제) : 특정 공공조달이나 기금마련(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찰기업에 보조금 수령 관련 정보제출 요구. 부당한 혜택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입찰이 불가하며 펀딩 프로젝트 참여 역시 배제. EU 역외 정부가 EU 지역 내 2억5천만 유로 이상의 공공조달 입찰건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정황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이번 발표된 제도가 내년 법제화 되는 경우, 향후 보조금 관련 EU 규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기업들의 예의주시가 특히 요구된다.

7)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초안을 발표했으며, 2022년 3월 이사회는 일반적 접근을 채택하고 2022년 6월 의회에서 수정안을 채택한다. 이사회와 집행위의 입장은 유사하나, 의회는 과도기 / 무상 할당 폐지 시기 / 배출 범위 관련 집행위와 입장 차가 있으며, 2022년 10월 삼자 협의의 진행이 예상된다. 향후 삼자 협의를 통해 규정(안) 내용을 확정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CBAM은 역내로 제품 수입 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를 구매,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관할 당국에 승인 받은 수입업자가 제품별 탄소함유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 후 해당 수입에 대해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당국에 신고·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안의 적용대상 제품은 배출량이 큰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이며 유럽의회는 유기화합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를 추가로 제안했다. 적용대상 제품 HS 코드 별 세부 품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분야 HS	HS	세부 코드
시멘트(4개)	25	252310, 252321, 252329, 252390
전력(1개)	27	271600
비료(5개)	28, 31	280800, 2814, 283421, 3102, 3105(HS 310560은 제외)
철강(38개)	72	7201, 7203, 7205, 7206, 7207,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218, 7219, 7220, 7221, 7222, 7223, 7224, 7225, 7226, 7227, 7228, 7229
	73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
알루미늄(8개)	76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8) EU 공급망실사 지침 (Supply Chain Due Diligence Directive)

2020년 4월 법안 수립 계획을 밝힌 뒤, 2022년 2월 집행위 초안을 발표했다.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EU 역내외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심, 인권환경 관련 공급망 내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여 예방완화피해 구제 조치 시행의 의무화다. 이번 지침의 대상으로는 고용인원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역내외 대기업, 고위험 산업군(섬유, 광물, 농업, 임업, 수산업) 중견기업으로 협력사와 실사준수계약 체결 등을 통해 전 공급망에 걸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및 완화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실사의무 이행에 대한 보고서 또는 성명서를 기업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EU 회원국은 감독기구를 지정하여 실사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집행위는 유럽 감독기구 연합회(European Network of Supervisory Authorities)를 설립하여 감독기구 간의 협력 및 조사, 제재 등에 대한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원국 별 국내법 입법 과정에서, 위반시 제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수준이 상이할 전망으로 입법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료: EU 집행위

TBT

기술장벽은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

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EU는 어린이의 신체와 직접적으로 닿는 장난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년간 거의 개정 없이 유지되던 EU 장난감 안전규제는 2009년 신안전지침(2009/48/EC)이 공포된 후로 지속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장난감 내 함유되는 화학성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2020년 11월까지 총 14건이 개정), 가장 최근 변경된 화학물질은 2019년 11월 알루미늄(Aluminium) 및 페놀(Phenol)에 대한 내용이다.

-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역
 - 2012년 3월, Cadmium 허용치(migration limits) 조정
 - 2013년 7월,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TCEP, TCPP, TDCP, BPA 함량 제한
 - 2014년 6월, Nickel 허용 품목 조정
 - 2015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Formamide, BIT 및 CMI, MI 함량 제한 - 2017년 3월 Lead 허용치 조정
 - 2017년 5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및 BPA 함량 제한
 - 2018년 5월, Chromium VI 함량제한
 - 2019년 11월, Aluminium 허용치 조정
 - 2019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함량 제한 등

2)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강화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했다.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용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 유럽 내 BPA 위해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06년부터 식품 용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A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해성에 대해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물질사용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젖병 내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는 일정 제한치(0.6mg/kg)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유럽 물질화학청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2017년 6월, BPA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REACH 고위험성 물질목록(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등재시켰다. 집행위는 내부적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물질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최대 허용기준을 0.6mg/kg에서 0.05mg/kg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가므로, BPA 제한용량(0.05mg/kg)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니스 및 코팅제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기업은 1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조 및 적합성 선언 기업정보(기업명 및 주소) - 적합성 선언 작성 시기 - 제조 시, EU 규정 No.1935/2004 내 3, 15, 17 조항의 준수 여부 -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 제품 정보(식품군 종류, 식품처리에 사용되는 온도, 기간 등) 및 제조품 정보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시킨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0.05mg/kg를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 및 컵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향후 BP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S(BPS)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BPS 물질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는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조기업의 BPS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이 같은 추세로 향후 EU 내 BPA 물질 금지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BPS 물질 제한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돼 우리 기업의 예의주시가 요구된다.

3)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2020년 2월 27일부로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EU는 피부와 직접적으로 닿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페니페놀 물질

의 최대허용 농도제한(11월) 및 일부 메리골드 물질 사용을 금지(7월) 한 바 있다. 올해부터 제한이 강화된 물질은 아래와 같다.

- (사용금지 물질)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염색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물질의 경우, 지금까지 마스카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 최대 4.6%까지 허용되어 왔다. 유럽 과학위원회(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는 상기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해당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지속 사용 시 잠재적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황산염 및 염산염(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의 경우,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과 기본적인 물질구조가 동일하므로 이들도 같이 금지해야 하며, 금지제품에 염색약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스카라, 아이브로우 및 헤어 염색약 내 해당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 (허용량 제한) 클림바졸(Climbazole)비듬방지제에 주로 사용되는 크림바졸의 경우, 0.5% 내에서 사용이 허용되어 왔으나 과학위원회는 평가 후, 기존 농도로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제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0.2~0.5% 이내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로션, 크림, 발 전용 제품 : 최대 0.2%까지- 샴푸의 경우 0.5%까지만 안전(비듬샴푸의 경우에는 2%까지 허용)
화장품 성분에 대해 새로운 제한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 내 반입자재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중이던 화장품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하는 등 생산라인에도 큰 차질을 받게 된다. 최근 역대 K-뷰티 열풍에 힘입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보다 주시해 우리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

폐기물 기본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완제품에 포함된 고위험 우려 물질에 대한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는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가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신고제의 목적은 폐기물 처리자로 하여금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위험 우려 물질(SVHC)이 포함된 완제품이 시장에서 점차 퇴출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고위험 우려 물질을 중량 대비 0.1% 이상 함유한 완제품을 공급하는 EU 내 모든 기업은 제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SCIP 신고를 위해유럽화학물질청(ECHA)은 2020년 10월 28일 우려물질을 함유한 제품 정보를 공개하는 SCIP데이터베이스를 개설했다. 따라서 신고된 물질은 다음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echa.europa.eu/de/scip>)

5) EU 신 체외진단기기법(IVDR) 시행 임박

신 체외진단기기법[IVDR : Regulation(EU)2017/746]이 2017년 5월25일 발효된 이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5.26일부터 적용예정이다. 기존 지침(IVDD: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대비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유럽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없이 자가 적합성 선언 후 시판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 등급 분류에 따라 유럽 공인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수행이 필요하다. (체외진단기기 유형 분류 시스템을 위험 등급에 따라, 가장 낮은 Class A에서 가장 높은 Class D로 분류, Class A 등급을 제외하고는 지정 인증기관으로부터 필수 인증 취득 필요함)

앞으로 EU에서 판매 예정인 체외진단기기들은 엄격한 임상적 증거 제출하고 시판 뒤에도 사후 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업계는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타

◦ EU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수입제한 물량) 내 수입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해당 조치는 미국이 2018년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아시아의 철강이 유럽 시장으로 몰릴 것을 우려하여, 유럽 집행위원회가 유럽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26개 철강재 및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치이다. 지난 2020년 7월 01일부터 모든 국별 쿼터를 연간에서 분기별로 변경하고, 대규모 철강 수출자의 잔여쿼터 접근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개정안이 발효 되었고, 해당 개정안에 따른 3차연도 세이프가드는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유럽철강협회(EUROFER)가 세이프가드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고, 또한 EU 12개 회원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핀란드, 헝가리, 스페인, 체코, 벨기에, 불가리아 회원국(독일, 프랑스, 이

탈리아, 슬로바키아, 루셈부르크, 핀란드, 헝가리, 핀란드, 스페인, 체코, 벨기에, 불가리아)이 세이프가드 연장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역내 생산, 소비 및 고용 등, 철강 수입으로 업계 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2021년 6월 10일 EU 집행위는 WTO에 역외국 철강재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3년(2021.07.01~2024.06.30) 더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 집행위는 현재 방식과 동일한 총 26개 품목 내 쿼터제를 시행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연도별 3% 중량 방식 역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개정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역내 기업에게 공경경쟁 여건을 보장하는 EU 전자상거래 VAT 개정법을 2020년 2월 채택했으며, 2021년 7월1일부로 시행한다. 동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IOSS(관부가세 신고 간소화 시스템) 플랫폼 신규 도입, 역외 수입 상품의 VAT 면제 조건 폐지, 부가세 준수 책임 이전 (판매자→플랫폼 사업자) 등이다.

한국 인스턴트 라면류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검역 강화

1. 에틸렌옥사이드 정의

에틸렌옥사이드(C_2H_4O , Ethylene oxide)는 물과 기름에도 잘 녹으며 공기보다 약간 무거운 가스이다. 에틸렌옥사이드는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여 단백질이나 유전자에 노출될 경우 이들 물질을 공격하여 화학적으로 변형시킨다. 이로 인해 유전자 변형을 야기해 백혈병과 유방암 등의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2007년 UN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 되었다.(자료: 세포 파괴와 암을 유발하는 샴푸와 주방세제의 유해 물질들, 북랩, 2014)

에틸렌옥사이드는 박테리아의 세포벽에 침투하여 세포의 번식을 억제하거나 화학적인 방법으로 파괴하는 등 멸균력이 강해 농약 살충제, 의약품, 수술기구 등의 멸균 소독에 사용된다. EU에서 에틸렌옥사이드를 사용하여 제조된 살충제(pesticide)는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소독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살균성 제품(biocidal product)에는 저자극성 에틸렌옥사이드 첨가가 허용된다.

2. 에틸렌옥사이드 검역 강화 배경

2020년 9월 인도에서 수입된 참깨에서 에틸렌옥사이드가 EU 최대 허용치인 0.05mg/kg 이상*으로 검출됨에 따라 EU는 인도산 참깨에 대해 엄격한 수입 통관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를 계기로 식품의 에틸렌옥사이드 오염 여부 검사를 강화 하였다. 2021년 지난 3월 보고된 EU의 에틸렌옥사이드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한 총 650개 이상의 제품 중 87개의 제품에서 에틸렌옥사이드 최대 허용치를 규정 비 준 수 품목이 확인되었다.

* 참깨의 에틸렌옥사이드 최대 허용치는 규정 (EU) 2015/868에 따라 기존 0.2* mg/kg에서 0.05* mg/kg으로 낮춰짐

2021년 6월 아이스크림, 시리얼, 육류 가공제품, 제과, 발효 유제품 및 치즈 등에 첨가제로 들어가는 증점제인 " 로커스트콩검 (Locust Bean Gum, EU 식품 첨가물 고유번호: E410)"에서 에틸렌옥사이드 오염이 확인됨에 따라 로커스트콩검이 들어간 제품들과 오염 가능성이 큰 "구아검(Guar gum, E412)"이 첨가제로 들어가는 제품들이 리콜 대상이 된 바 있다.

또한 2021년 8월 독일 슈투트가르트 슈투트가르트의 화학수의연구소(Chemische und Veterinäruntersuchungsamt Stuttgart)가 에틸렌옥사이드 오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수입된 인스턴트 라면 25개의 샘플을 조사한 결과 베트남, 한국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된 라면에서 에틸렌옥사이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고, 한국 N사의 라면 제품은 리콜 대상이 되었다.

3. 에틸렌옥사이드 검역 강화 규정

EU는 제3국에서 역내로 반입 및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EU 집행위 실행규정 (EU) 2019/1793에 따라 일시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EU 집행위는 인체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제품 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관리하고 있다. 관리감독 규정 내 부속서I는 제3국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식품·사료 중 역외국별 국경통제가 필요한 물질들을 다루고 있으며, 부속서II는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펜타클로로페놀, 다이옥신에 의한 오염과 미생물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다루며 관련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EU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물질·제품 리스트는 2002년 설치된 식품·사료조기경보시스템(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이하 RASFF)의 통지를 바탕으로 수립되는데, 집행위는 이 경보시스템에서 아시아에서 수입된 인스턴트 라면 및 식물 성분 함유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오염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지난 12월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 수입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EU) 2019/1793를 개정(관련 개정 규정 (EU) 2021/2246)하여 제 3국 수입 식품 검역을 강화하였다. 개정된 규정 (EU) 2021/2246에 따라 부속서에 등재된 규제 대상 품목의 EU에 수출을 위해서는, 제품의 선적 전 정밀검사를 통해 EU의 최대 허용 잔류 기준을 준수했다는 시험성적서와 검사 공식증명서를 통관 시 제출해야만 한다. 해당 개정안에 따른 검역 강화는 몇번의 유예를 기간을 거쳐 2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한국의 인스턴트 라면류(CN코드*1902 30 10)와 식물성분 함유 건강보조식품(CN코드 1302, 2106 등)이 식품·사료 관리감독 규정의

부속서II 에 추가로 등재 됨에 따라, 에틸렌옥사이드 물질이 포함된 한국산 인스턴트 라면류 및 건강식품의 EU 수출을 위해서는 에틸렌옥사이드 최대 허용치 준수여부를 증명하는 시험 성적서와 검사 공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 CN 코드: CN Code는 HS code 공통 6단위 하에 2단위를 추가하여 사용하는 코드

시험성적서는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부산지소, 한국분석기술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한국에스지에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공식증명서의 경우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4개월이며, 증명서의 발행일은 시험결과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증명서의 제출 의무는 2월 18일부터 EU 역내에 도착하는 제품에 적용되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수입통관이 불가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CN코드(HS코드) 2106(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식품보조제)으로 신고되는 식품은 수입통관 시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관련 일시 검역 강화 대상으로 분류되므로, 수출 시 이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자료원: Lebensmittelzeitung, top agrar online, 독일 위험 평가 연구소(Bundesinstitut für Risikobewertung), 독일 연방소비자보호 식품안전청, EU 집행위원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북랩,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코트라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슬로바키아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7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표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이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 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EU 관세는 크게 협정 특혜관세,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관세, 최혜국 관세(MFN; most-favoured-nation)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협정 특혜관세는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로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특정 세율이 적용되며(예시 : 한-EU FTA로 0% 무관세 수출), 최혜국 관세는 WTO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말한다.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전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 (참고) 일반특혜관세제도 분야별 해당국가 리스트(2021년 5월 12일 확인 기준) :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19/may/tradoc_157889.pdf

현재 GSP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EU 집행위는 만료를 앞두고 2021년 9월 22일 개정안을 제안했다. 특히 집행위는 GSP 참여국이 인권·환경보호·거버넌스와 함께 이민문제 해결에 협력할 것을 개정안에을 통해 제안하고 있다. 또한 GSP 수혜국이 준수해야 할 기존 27개 협약중 6개 협약이 추가됐으며, 특히 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특혜 철회절차를 18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EU 의회와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후 승인이 되면 최종 채택 될 예정이다.

1) 관세율

EU 공동 관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 관세 분류방식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마련한 복합분류(CN; Combined Nomenclature) 방식에 의해 분류된다. CN은 HS 품목 분류표와 CN 소호(sub-heading) 분류, 추가적인 부(Section) 또는

관련된 챕터(Chapter)의 주(Note) 등 보충규정이 포함되며, 이사회 규정 EEC 2658/87 부속서 내에서 명시된다. CN 분류체계는 8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는데, 처음 6자리 숫자는 HS 코드와 동일하고 나머지 7,8번째 숫자는 EU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세부적 분류체계가 더해진다. 이 외에도, CN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EU 차원의 세부적 분류목적을 위해, CN 8자리에 2자리를 추가한 10자리 형태의 통합관세율(TARIC;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 존재한다. Taric은 특혜관세, 관세할당 등 관세율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비롯해 과일과 채소의 표준 수입가격 및 단위가격, 농산물 구성요소, 특정물품의 수량 제한,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제, 수출입 신고서에 사용되는 코드 등 기타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2)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상이)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2021년 5월 기준, 적용되고 있는 국별 부가가치세(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electronic-services/vat-rates_en

한편, 22유로 미만 소규모 제품에 적용돼왔던 VAT 면제제도는 고부가가치 소형제품 판매가격을 22유로 미만으로 허위 작성하는 등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7월 1일부로 폐지되어 현재 제품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가 부과되고 있다.

3) 관세제도 신규내용

2020년 9월 28일, EU 집행위는 현행 관세 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해 보다 통합된 관세동맹을 위한 관세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회원국간 관세 행정시스템 수준이 다소 상이해, 시스템이 비교적 취약한 회원국 내 불법제품 유입 및 관세법 위반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와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서도 보다 탄력적인 관세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회원국 간 협력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세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역내 수입 관세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집행위가 추진 예정인 관세동맹 액션플랜은 크게 전자상거래 관리, 법규준수, 리스크 관리, 관세행정 협력 등 4개의 분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2024년 1월까지 전자상거래 기업의 VAT 납부여부에 대한 관세당국의 접근성을 확대해 수입물품의 판매처 추적, 저가신고 차단 등 통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관세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공동관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규준수 분야는 현재 시행중인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2021년 하반기 중 추진해 AEO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며, 위조품 등의 역내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법제화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EU 차원의 공동된 제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리스크 관리 분야의 경우, 현행 EU의 수입물품 전자신고 관리시스템(ICS2; Import Control System)을 2024년까지 개선해 회원국간 보다 통일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회원국별 세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 관세행정 협력을 위한 인적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발생 시 대응위한 검토 그룹 설립을 추진해 관세동맹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대응위한 의료품목의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연장(2022.1.1)

2022년 1월 1일, EU 집행위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품목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관세·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치를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EU는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심전계, 호흡기, 진단시약 등 총 41종의 의료품목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2020년 1월 30일부터 면제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중요 의료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3차례 연장되었다.

◦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개정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역내 기업에게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하는 EU 전자상거래 VAT 개정법을 2020년 2월 채택해, 2021년 7월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동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IOSS(관부가세 신고 간소화 시스템)

플랫폼 신규 도입, 역외 수입 상품의 VAT 면제 조건 폐지, 부가세 준수 책임 이전 (판매자→플랫폼 사업자) 등이다.

- EU 집행위,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 중단 제안

2022년 4월 27일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우크라이나의 생산·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년간 모든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 중단을 제안 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EU의 수입 쿼터제가 적용되는 농산물과, DCFTA 체결로 단계적 관세 적 관세 철폐 중에 있던 비료, 알루미늄, 자동차 등 일부 공산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EU 내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우크라이나 면제 및 우크라이나에 부과된 기존 반덤핑 관세 조치 해제도 이번 제안에 포함되어 있다. 해당 제안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동시에 역내 식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유럽 의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최종 발효 될 전망이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

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관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EU는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CLASS)을 2020년 5월 구축해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품목에 대한 EU 결정(CCC Conclusion), 분류규정(Classification Regulation), EU 사법재판소 규정(ECJ Ruling), Taric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Major Port an Traffic Volume

◦ 주요 무역항: 슬로바키아는 내륙국가로 바다에 접한 항구는 없다. 수출입 시 일반적으로 슬로베니아 코퍼항을 통해 운송된다. 대신 슬로바키아를 흐르는 가장 큰 강인 다뉴브 강에 연한 3개의 항구가 있다. 하나의 주요 항구는 브라티슬라바에 있고 다른 두 개의 작은 항구는 코마르노와 슈투로보에 있으며 헝가리 국경 근처에 있다. 브라티슬라바 항구의 주요 목적은 벌크/개별 상품의 재적재, 액체 물질의 재적재 및 증량물 및 특대형 화물의 재적재이다. 브라티슬라바 항은 슬로바키아 유일의 종합 터미널(철도 화물, 육로 화물, 내륙 수로 운송)이다.

◦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 브라티슬라바항은 24,000㎡의 면적과 1400TEU의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 슬로바키아 내륙수로 화물운송 화물량은 총 178만 톤이다. 2019년에 여객선 상륙 횟수는 8.21% 증가해 총 3,164회를 기록했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78% 감소한 698회에 그쳤다.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 Major Airport and Traffic Volume

◦ 주요 공항: 슬로바키아에는 현재 6개의 국제공항이 있다. 브라티슬라바(BTS), 코시체(KSC), 포프라드(TAT), 질리나(ILZ), 슬리아치(SLD), 피에스파니(PZY) 공항이다. 슬로바키아 승객들은 주변 국가의 공항도 자주 이용한다. (비엔나 공항, 크라쿠프, 부다페스트, 프라하 등)

◦ 물동량: 2018년 기준(22년 기준 최신) 슬로바키아 주요 공항의 화물량은 총 24,622,628톤이다. 브라티슬라바 공항 24,458,023톤, 코시체 82,002톤, 슬라치 73,922톤, 피에슈타니 공항 8,680톤이다.

◦ 승객 수/이착륙횟수 : 2021년 기준 승객 수는 브라티슬라바(480,152명), 코시체(168,742명)이며, 이착륙 횟수는 포프라드(11,000회), 질리나(11,331회)이다.

3) 유의사항 / Caution

특대화물 또는 특대운송은 화물이 법률에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슬로바키아 상황에서 허용되는 길이 16.5m, 너비 2.55m, 높이 4.05m 화물이다. 또한 초과 운송의 개념도 있다. 단 크기가 아니라 무게에 따른다. 세트의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선적을 의미한다. 한 개 차축의 경우 최대 8톤까지만 허용된다. 이러한 화물을 운송하려면 안전 절차를 따라야 하며 요청 시 운송 회사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기타 참고사항 / Other Reference

20피트 컨테이너를 위해 한국(부산)에서 슬로바키아(브라티슬라바)까지 운송하는 비용은 21년 하반기에 약 8,000 \$이며, 4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가격은 약 15,000 \$ 수준이다. 코로나19 이후 물동량 증가로 운임이 2배 정도 오른 수치이다.

슬로바키아의 도로 화물 운송 비용은 하역 장소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 가격은 컨테이너 1개당 200 €에서 500 € 유로 수준이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은 관세 동맹을 맺고 있어, 역내로 물품이 한 번 반입이 되면 그 이후에는 회원국 내에서의 이동이 자유롭다. 따라서 슬로바키아에 수출을 원한다면 EU 내 공통 통관제도인 Union Custom Code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EU 국 중 어느 곳으로든 반입시키면

된다.

유럽연합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Union Custom code를 따라야 한다. 거듭된 테러 위기 속에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의 원만한 조달을 위해 2016년 5월 1일부로 Union Custom Code(Regulation EC No 952/2013)가 발효되었다.

1) 정식통관 절차

◦ EORI 번호 등록

EORI(The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번호는 '수출입업자 세관등록'을 의미한다. EU 회원국의 세관 당국에서 역내 수출을 희망하는 제3국의 자연인, 혹은 법인에 부여하는 등록번호이다. 관세를 내기 위해 1개의 회원국에 등록하면 EU 전 지역에서 통용되는 EORI 번호를 받을 수 있다.

◦ ENS 서류 제출

ENS(Entry Summary Declaration)은 '수입화물 정보'를 의미한다. 수출업자는 수입화물정보를 EU 회원국 중 첫 번째로 통과하게 되는 국가의 세관 당국에 사전에 작성해 온라인으로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ENS 제출 기한은 운송 수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컨테이너 해운 화물: 외국 선적항에서 선적을 시작하기 최소 24시간 전

- 산적 해운 화물: 도착 최소 4시간 전

- 근해 해운: 도착 최소 2시간 전

- 중단 거리 항공편(비행시간 4시간 이내): 항공기의 실제 이륙 시간

- 장거리 항공편(비행시간 4시간 이상): 공동체 관세 지역 내 첫 공항에 도착하기 최소 4시간 전

- 도로 교통: 도착 최소 1시간 전

- o 90일 이내에 관세 납부에 이상이 없고 EU에 반입될 수 있는 조건(인증 마크 부여 등)을 충족하면 역내 반입된다.

2) 전시 물품통관 절차

전시 물품은 EU 내 공통 통관제도인 Union Custom Code의 '임시허가제도(temporary admission)'의 한 종류로 정식 통관제도의 절차를 모두 따를 필요는 없다. 전시 물품통관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 전시 물품의 관세는 물품 본래 관세의 3% 만이 부과된다.

- 24개월 이내에는 관세 당국에서 빠져나와 역내 유통되어야 한다.

- 더불어, 전시 물품은 ATA나 CPD 카르네(carnet)를 통해 수출할 수도 있다.

- o 중앙집중식 통관(2025년부터 시행 예정)

EU는 2025년부터 중앙집중식(Centralised Clearance) 통관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수입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역내 타 지역에서 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운송(Multi-stop)을 통해 물품을 해당 통관사무소까지 이동시킨 후 수입통관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 경우 보세운송을 위한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 시간이 추가로 발생해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로 작용해왔다. 이에, 이번 도입되는 중앙집중식

통관방식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되어 있는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돼,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통관방식은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회원국 간 세관 인프라 시설 수준 차이가 매우 커 EU 전체의 조화로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시기를 조금 늦추기로 결정했다.

통관 시 유의사항

- 2015년부터 발효된 한-EU FTA의 호혜 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판매자(화주)가 한국 정부에 수출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슬로바키아로의 통관은 EU 관세법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보세창고, 위탁가공무역(IPR 및 OPR), 세관 감독하의 가공(PCC) 등의 방식은 EU 회원국과 동일하다,
- 슬로바키아에 일반적인 수출 경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해상운송으로 우리나라의 항구로부터 유럽대륙의 항구로 해상운송 후 EU내 육로 운송을 하는 방법이다. 유럽대륙의 도착 항구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및 로테르담, 벨기에의 앤트워프, 독일의 함부르크, 폴란드의 그단스크, 슬로베니아의 코퍼항구가 많이 이용되며, 슬로바키아로 부터 육로 운송이 가장 짧은 코퍼(Koper)항이 이용빈도수가 가장 높다. 부산항에서 코퍼항까지는 일반적으로 6주의 운송기간이 소요되며, 코퍼항으로부터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또는 인근도시까지의 육로운송은 일반적으로 2일이 소요된다. 두 번째의 경로는 항공 운송으로, 브라티슬라바공항은 화물 창고가 따로 없어 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항, 체코 프라하 공항,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항으로 보낸 뒤 육로 운송을 통해 슬로바키아에 수출된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하나로티엔에스 슬로바키아(HTNS Slovakia, S.R.O)

주소	Vajanskeho 1521/18, 924 01, Galanta, Slovakia
전화번호	(421-31) 780-4530
이메일	alexoh@htns.com
홈페이지	https://www.htns.com/kor/
비고	슬로바키아 삼성전자 및 협력사의 물류 서비스 제공 업체

◦ 팩트라 인터네셔널(Pac-Tra Slovakia S.R.O)

주소	Z. Kodalya 767, 924 01 Galanta, Slovakia
전화번호	(421-31) 780-1224
이메일	info@pac-tra.sk
홈페이지	http://www.pac-tra.sk/
비고	슬로바키아 기아자동차 및 협력사의 물류 서비스 제공 업체

◦ 다호 솔루션(Daho Solution, s.r.o.)

주소	G´ 902, Hala DC 5 are´l ProLogis, 924 01 G´
전화번호	(421-31) 780-1224
이메일	admin@daho.sk
홈페이지	http://www.daho.sk/home/
비고	물류 창고 보관서비스, 육로 운송 포워딩 등의 서비스 제공

◦ Albatros Logistics sro

주소	Strecno Distribution Center, street SNP 811/168 013 24 Streno
전화번호	+421413211252
이메일	sk@albatros-cargo.com
홈페이지	https://www.albatros-logistics.sk
비고	아시아 - 유럽간 one stop service 제공 (door-to-door), 중동부 유럽 특화 서비스, 자동차-전자부품 및 에너지 관련 제품 취급 전문 고객 need 파악 및 고객 만족 실현, 시장변화 대응 및 신규시장 개척 등. 기아자동차 생산법인 인근소재

<자료원 :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유럽연합 27개국 회원국 중 하나인 슬로바키아는 투자에 관한 법률 역시 유럽연합 공동의 이익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제정되었다. 따라서 슬로바키아의 투자법을 살펴보기 이전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조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슬로바키아의 투자법(Investment Incentives Act): 슬로바키아의 투자법은 Investment Aid Act라고 불리며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법률과 함께 검토해 보면 좋다.

- Act no. 231/2001 Coll. on State Aid
- Act no. 5/2004 Coll. on Employment Services
- Act no. 595/2003 Coll. on Income Tax

○ 투자 보조를 받기 위한 절차: 슬로바키아의 투자 보조 절차는 투자법(Investment Aid Act)에 명시되어있다.

- 슬로바키아 무역투자청(SARIO)와 논의를 통해 투자 보조금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한다.
- 투자자는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에 투자 계획과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제출한다.
- 제출된 계획안이 전문적인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제출된 투자보조 요청안에 대한 1차 평가가 이루어진다.
- 검증이 완료되면 경제부에서 투자자에게 구체적인 투자지원 제안을 한다.
- 투자자는 투자지원을 받겠다는 신청서를 작성한다.
- 슬로바키아 정부(총리실)에서 최종 평가 후 승인한다.

투자인센티브

□ 외국인 투자가 인센티브 제도

슬로바키아의 경제 발전 및 지역 간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그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 슬로바키아와 남부 슬로바키아에 더욱 많은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하였다. 투자 인센티브 제도의 승인 절차는 주관 부서인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에서 진행되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절차 가이드라인은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슬로바키아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EU 기준에 준거하고 있으며, 정부보조금은 산업 및 지역별로 지급 상한이 설정돼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 혹은 실업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급 상한이 높은 편이다. 슬로바키아는 정부보조금법(State Aid Act)을 근간으로 투자지원법, 소득세법, 고용법에 의해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구체적인 지원범위는 슬로바키아 경제부 및 통상투자청(SARIO)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고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다.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2015년 9월 15일부터 유효하다.

1)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분야는 총 4가지이다.

- 공업생산(Industrial production)
- 기술센터(technology centers)
 - 공업생산과 기술센터의 혼합 시설 포함
- 사업 서비스 센터(business service centres)

2) 투자 인센티브는 총 4가지 형태로 주어진다.

- 세금 감면(income tax relief)
- 투자현금보조(cash grant for tangible and intangible fixed assets)
- 고용 보조(contribution for newly created jobs)
- 지방정부 혹은 중앙정부로부터 부동산 저가 매입(rent/sale of real estate at a discounted price)

3) 투자인센티브 수여를 위한 투자 분야별 조건

◦ 공업 생산(industrial production): 공업 생산 분야의 투자 인센티브 수여 조건은 지역의 실업률, 투자 장려 분야(priority areas) 지정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 예를 들어 실업률이 슬로바키아 평균 실업률보다 높은 동부 슬로바키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낮은 서부나 중부 슬로바키아보다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일부 동부 슬로바키아의 경우에는 25만 유로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현금보조(cash grant)를 받을 수 있지만, 동부에 비해 실업률이 낮은 중부 지역은 2000만 유로 이상을 투자해야 투자현금보조를 받을 수 있다.

- 투자 중 증액 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년에 비해 생산량이 5% 이상이 되어야 인정된다.

◦ 기술 센터(technology center): 기술센터 투자 인센티브는 크게 투자 장려분야(priority areas)*와 그 외(others) 분야에 따라 인센티브 수여 충족 기준이 달라진다. 기술센터의 투자 장려 분야는 아래와 같다.

- 식료품 생산
- 화학 물질 생산
- 의약품 생산 등

* 투자 장려분야(priority areas)에 투자할 경우, 1) 신규 일자리 10개 이상 창출, 2) 해당 지역에 1.8배 이상의 급여 지급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그 외(others)의 지역보다 더 쉽게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현금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 장려 분야에 10만 유로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그 외 분야에서는 현금보조를 받을 수 없다.

◦ 사업 서비스 센터(business service center): 사업 서비스 센터 인센티브 역시 크게 투자 장려분야(priority areas)와 그 외(others) 지역에 따라 인센티브 수여 충족 기준이 달라진다. 사업 서비스센터의 투자 장려 분야는 아래와 같다.

- 법인 경영(company management)
- 재정 사업(finance business)
- IT

4) 투자 인센티브 수혜 시 주의사항

◦ 투자자는 최대 3년 이내에 영업 활동을 개시해야 한다(단, 대규모 투자일 경우 5년).

◦ 투자자는 프로젝트 및 완수 후 5년간 투자 프로젝트를 매년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실제 투자 금액이 예상치의 85% 이상, 실제 일자리 수는 예상치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 정부 투자 보조 비용의 최대 비율은 중부 및 동부 슬로바키아의 경우 각각 40%, 50% 및 서부 슬로바키아의 경우 30%로 설정되어 있다(수도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지역의 투자는 해당 사항 없음).

◦ 투자인센티브 정보들은 대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마다 조금씩 변경사항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슬 경제부의 심의가 필요하다. 투자 계획 시 반드시 슬로바키아 투자청(SARIO)으로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 * 이메일 : invest@sario.sk

제한 및 금지(업종)

슬로바키아의 투자법은 EU 내규와 일맥상통해야 한다. 따라서 유럽 연합 규칙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업종으로 지정한 아래의

항목은 슬로바키아 내에서도 투자가 제한된다.

- 농업 및 어업
- 석탄 산업
- 선박 제조업
- 교통
- 에너지 인프라 사업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슬로바키아에는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산업단지

- PARK KOŠICE / Vekúša Ida

규모	97,000 sqm
위치	Vekúša Ida - priemyselný park, E571, 044 55 Vekúša Ida
임차료	개별문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슬로바키아무역투자진흥원(SARIO) - 주소: Trnavská cesta 100 82101 Bratislava Slovak Republic - 전화번호: +421 2 58 260 153 - E-mail: stanislava.lubinova@sario.sk - 홈페이지: www.sario.sk ◦ 산업단지 운영사: Tel. +421 907 775 269, email : info@pozemkyke.sk

<자료원 : 슬로바키아 무역투자진흥원(SARIO)>

주요 지역별 여건

-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지역

- 면적: 2053km²
- 인구: 60만 명
- 주요 산업: 화학, 자동차, 공학, 식료품 제조
- 비고: 외국기업 Volkswagen(독일), TESCO(영국), IBM(미국), Dell(미국), Slovnaft(헝가리) 등 진출

- 트르나바(Trnava) 지역

- 면적: 4146km²
- 인구: 55만 명
- 주요 산업: 자동차, 전자, 화학, 유리
- 비고: 슬로바키아 내 외국인투자금액(FDI) 3위인 지역 / 우리기업 삼성전자 진출 / 외국 기업 Peugeot Citroen(프랑스), Swedwood(스웨덴), Delphi(미국), ON 반도체(미국) 등 진출

- 질리나(Zilina) 지역

- 면적: 6809km²
- 인구: 69만 명

- 주요 산업: 철강, 전기통신공학, 기계류
- 비교: 우리기업 기아 자동차 진출 / 외국기업 Panasonic(일본) 등 진출

○ 반스카비스트리차(Banska Bystrica) 지역

- 면적: 9454km²
- 인구: 66만 명
- 주요 산업: 광업, 기계·목재 가공업, 의약품
- 비교: 외국 기업 Biotika, Yura Eltec, Nemak and Slovalco.

○ 코시체(Kosice) 지역

- 면적: 6754km²
- 인구: 77만 명
- 주요 산업: 금속공학, 화학, 전자 산업
- 비교: 외국기업 US Steel Kosice(미국), Embraco(브라질) 등 진출

○ 트렌친(Trencin) 지역

- 면적: 81,996km²
- 인구: 60만명
- 주요 산업: 금속공학, 자동차 산업
- 비교: Leoni, Adient, Hella, Nestlé, Enics, Continental Matador and Delta Electronics 등 진출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7	2018	2019	2020	2021
4016.77	1675.08	2448.71	-1929.73	-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7	2018	2019	2020	2021
1325.38	321.69	153.25	233.46	-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9	16	1	32,634	16	31,653
2020	19	5	25,370	31	23,477
2021	17	3	14,789	25	14,78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0	0	32,330	12	31,355
도매 및 소매업	2	0	6	0	0
운수 및 창고업	3	0	78	3	7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	220	1	22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1	3	24,808	21	22,909
도매 및 소매업	2	2	336	4	342
운수 및 창고업	6	0	226	6	226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7	3	14,789	25	14,78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삼성전자(株) 슬로바키아 생산법인

진출연도	2002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자제품(TV, 모니터)
모기업명	삼성전자(주)

○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법인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엔진
모기업명	기아자동차(주)

○ 동원슬로바키아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부품 제조
모기업명	동원금속

○ DRB Slovakia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도어트림 실링제품
모기업명	동원고무벨트

◦ Donghee Slovakia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부품(연료 탱크 등 금속 프레스 제품)
모기업명	동희

◦ Mobis Slovakia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생산법인, 단독 투자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부품(트랜스미션, 센터페시아 모듈 등)
모기업명	현대모비스

◦ Bang Joo Electronics Slovakia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사출조립물(LCD TV 아세이 등)
모기업명	방주전자

◦ SAMIL BALENIE

진출연도	2003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포장재
모기업명	삼일

◦ SUNGWOO HITECH Slovakia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부품
모기업명	성우하이텍

◦ Seongji Slovakia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케이블 어셈블리, PBA 등
모기업명	성지

◦ Yura Corporation Slovakia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용 와이어링 하네스 등
모기업명	유라코퍼레이션

◦ ILJIN Slovakia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부품(리어악셀, 베어링 등)
모기업명	일진

○ Pactra Slovakia

진출연도	2001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물류
취급분야	운송 및 보관 서비스
모기업명	팩트라

○ Alpha Display Slovakia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생산법인, 인수합병에 의한 Joint Venture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산업용 디스플레이 조립 및 유통
모기업명	알파디스플레이

○ ATS Europe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부품(플라스틱 클립, 파스너 등)
모기업명	ATS

○ Hyundai Transys Slovakia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부품(시트 모듈)
모기업명	현대트랜시스

〈자료원 :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1) 개요

슬로바키아는 한국과 달리 한국의 유한회사와 비슷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s.r.o.”, 이하 유한회사라 한다)가 법인의 일반적인 형태로, 거의 모든 기업이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와 비교해서 자본금, 주주인원수, 법정기구, 각종 변경 시 절차 등에 있어서 간편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한회사의 법정기구에는 대표자와 주주총회가 전부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형태인 주식회사에서처럼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표자에게 포괄적인 권한이 위임돼 있다. 이하에서는 유한회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설립과 관련해 사업면허를 먼저 받아야 한다. 사업면허소에서 사업면허를 발급하며, 신청 시 정관 및 대표자의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주주가 될 경우 주주인 법인의 등기부 등본이 첨부돼야 한다. 기간은 법상 7일이 소요된다.

최근 법인이 단독주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문의를 받는다. 슬로바키아 법상 유한회사는 또 다른 유한회사의 단독주주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의 모기업은 대부분 주식회사이므로 슬로바키아에 유한회사 설립 시 단독주주가 될 수 있다. 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상사 법원에 법인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위 사업면허, 정관, 대표자의 서명견본이 신청 시 제출돼야 한다. 기간은 역시 법상 7일이 소요된다.

이렇게 법인이 설립되면, 세무서에 소득세 및 부가세 번호를 신청한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부가세 번호의 발급이 어렵게 됐다. 부가세 번호 발급요건은 두 가지다. 첫째는 임의적 신청으로서, 설립 후 바로 세무소에 신청하지만, 최근 부가세 사기가 극성을 부려 세무서에서는 임의적 신청 시 발급을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두 번째 방법인 필수적인 신청이 유도되고 있다. 필수적 신청을 위해서는 매출이 49,790유로에 달해야 한다.

최근의 법 개정이 신규 진출업체에는 다소 무리한 요구가 되고 있어 우회적인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기존에 VAT를 가진 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 선호되고 있다.

이렇게 법인이 설립된 후 회사 입장에선 각종 변경사항을 등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령, 대표자 변경, 주소 변경, 자본금 변경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대부분 주주총회결의서, 새로운 대표자의 범죄경력조회서 및 서명견본, 신청서 등이 요구되며, 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 등본이 요구된다. 특히 감자의 경우 다소 절차가 까다롭다. 2번의 요식적 공시 기간인 15일과 90일을 거쳐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감자할 수 있다.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 매년 6월 말까지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승인 시 30일 이내에 법원에 승인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위 기간 내 재무제표의 복사본과 대표자의 승인을 서면으로 함께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31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 법인의 구분

슬로바키아에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슬로바키아 상법(Slovak Commercial Code)을 따르면 된다. 외국인 법인 설립에 추가 제한이나 제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슬로바키아 상법하에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합명회사 (General Partnership)
-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 주식합자회사 (Joint-Stock Company)
- 단순주식합자회사 (Simple Joint-Stock Company)
- 협동조합 (Co-operative)

이 외에도 유럽연합의 규제를 받는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는데 종류는 아래와 같다.

- 유럽 회사 (European Company)
- 유럽 협동조합 (European Cooperative Society)
- 유럽 경제 이익 단체 (European Economic Interest group)

지사

슬로바키아 내에는 한국에 모기업을 두고 지사로 진출한 기업이 많다. 슬로바키아 상업등기소(Slovak Commercial Registration) 등록을 하면 등록한 그날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조약을 통해 유럽 연합 내에서의 자유이동이 보장된 EU 나 EEA 지역의 법인이나 지사는 슬로바키아 내에 또 다른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지 않아도 슬로바키아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란 해외에서 모기업의 제한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슬로바키아에서 연락사무소를 통한 직접적인 사업 활동은 불가하나 수출입 촉진 활동, 모기업과 슬로바키아 기업 간의 소통 촉진의 역할은 가능하다. 슬로바키아 내에서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모기업을 대표해 슬로바키아 상업등기소(Slovak Commercial Registration)에 등록해야 하며 이후 검증 절차를 통해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1) 투자위험도 / Investment Risk 슬로바키아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고, 숙련된 노동력과 중부 유럽 중심부의 유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투자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대규모 투자 유치에 실패하여 많은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 지역 격차를 악화시켰다. 공공 및 민간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우호적이지만, 진행 중인 글로벌 위기는 일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기준 FDI의 대부분을 유치하는 제조업 부문의 경우 생산량이 -1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법인세 인상, 노동법 변경, 분쟁 해결 더딤 및 반복되는 부패 문제는 슬로바키아 시장의 매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세계은행의 2020 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사업 용이성 측면에서 190개국 중 45위를 기록했습니다(전년 대비 3계단 하락). 2021년 3월, 슬로바키아는 중요한 기반 시설 운영에서 10% 이상의 주식 또는 의결권을 취득하는 경우 공공 질서 또는 국가 안보의 방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투자 심사 메커니즘을 도입했습니다. 인수를 차단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은 운송, ICT, 에너지, 광업, 우편 서비스, 제약 및 화학, 야금, 의료, 물, 금융 및 농업 부문에 있다. 2) 투자진출형태별 애로사항 / Problems according to investment category ◦ 독자투자(유한책임회사): 개인은 최대 3개 유한책임회사의 단독 주주가 될 수 있다. 단, 단독 주주가 있는 유한 책임 회사는 다른 유한 책임 회사의 단독 설립자 또는 단독 주주가 될 수 없으며, 주주가 일방적으로 회사를 탈퇴할 수 없다. 또한 사회보험청을 상대로 세금, 관세 또는 체납된 개인 또는 법인(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 제외) 및 집행인가원에 채무자로 등록된 개인 또는 법인은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 독자투자(주식회사): 적립금의 강제적립 규정이 있다. 회사설립시 자본금의 10% 이상이 필요하다. 감독이사회 설치(위원 3인 이상)가 필수이며, 모든 유형의 회사 중 회사 설립 비용이 가장 높다. 회사 구성원의 보수 규칙 공표 의무, 중요한 비즈니스 거래 공표 의무 등 공개 주식 회사에 대한 기타 의무가 존재한다. ◦ 합자투자: 미국에서 합자투자를 할 때 파트너들 중 일방이 미국인 또는 미국법인이 있는가에 따라 합자 기업 종류가 갈린다. 합자회사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여 주주 간의 계약이나 정관에서 회사조직 간의 권한분배에 대한 사항을 달리 규정하여야 한다. ◦ 계약형 합작투자 :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둘 이상의 회사의 협력에 관한 것으로서, 참여 기업은 협력 계약을 체결한다. 동 계약은 슬로바키아어 상업 또는 민법에 의해 규율될 수 있다. 다만 계약상 합작법인은 별도의 법인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관련 회사 간의 관계는 전적으로 계약 관계이다. 따라서 계약상 합작투자 주체는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없으며 권리, 의무, 라이선스 등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 계약에 참여하는 각 회사는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협력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적용을 받는다. ◦ 기업형 합작투자 : 기업형 합작투자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JV의 구성원이 되는 둘 이상의 회사에 의해 통제되는 회사이다. 구성원(주주)은 JV를 새로운 회사로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JV는 특정 목적(예: 시설 건설 또는 제품 공동 판매)을 위해 설립되며, 목적이 달성되면 일반적으로 참여 기업의 협력이 종료되고 JV가 해산된다. JV의 구성원은 슬로바키아어 회사, 외국 회사 또는 둘의 조합일 수 있다. 3) 분쟁해결 / Settlement of Dispute 슬로바키아에는 많은 중재 기관이 있다. 사법절차를 통해 재판을 받기 보다, 참여자 간 중재를 통해 공통 합의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 중재 기관은 특히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인의 재산 청구에 대한 분쟁을 결정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비정부기관이다.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Association of Slovak Arbitration Courts (aSAS)는 슬로바키아 중재기관 협회로 당사자 간 분쟁해결을 지원한다. (TEL : +421 2 555 67006, Email : slas@slas.sk , http://slas.sk)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자연인이나 법인을 통해서 설립될 수 있으며 최소등록 자본금은 25,000유로이다. 주식회사는 최소 1명 이상의 경영진과 3명 이상의 이사회 인원이 있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슬로바키아 내에서 법인을 등록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이다. 슬로바키아어로는 spolonost, srudenim obmedzenym”이며, 회사명 뒤에 약어로 “spol. s.r.o.” 이나 “s.r.o.”로 표기된다.

1) 유한책임회사의 특징

- 한 명 이상의 자연인이 설립할 수 있으며 50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 슬로바키아 상법에 따르면 최소 등록 자본금이 5,000유로이어야 하며, 각 유한책임사원의株式이 최소 750유로여야 한다.
- 또한 유한회사를 슬로바키아 상업등기소(Slovak Commercial Registration)에 등록하기 전에는 ① 각 주주 개인 출자 자금의 30% 이상, 그리고 ② 슬로바키아 상법에 명시된 최소 등록 자본 전체의 50% 이상 납부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유한책임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출자한 금액에 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2) 유한책임회사 등록 절차

- 유한 회사 설립을 위한 문서 준비
 - 회사는 설립문서(다수의 설립인일 경우 협약서, 단일 설립인의 경우 증서)에 의해 설립할 수 있다.
 - 설립문서(Foundation document)는 모든 설립자나 설립자를 대신해 서명할 권한이 있는 자가 서명해야 하며 서명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영업허가(Trade licenses) 획득
 - 기업이 설립되면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영업허가(Trade licenses)를 얻어야 한다.
 - 영업허가에는 그에 따른 확인서류가 꼭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확인서류가 꼭 필요한 경우는 이를테면 의사와 같은 특정 분야의 사무실 등을 개업하는 경우인데, 이와 같은 영업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공식적인 교육이나 경험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업 관련 의무에 관해 공식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면 해당 기업 소속 고용인의 서류를 제출해도 상관없다.
 - 유관부서(Trade office)는 필요한 서류가 제출된 후 3일(Working days) 이내에 발행해야 한다.
- 법인등록(Incorporation)
 - 기업은 상업등기부에 등록된 시점부터 공식적으로 설립된다.
 - 신청서는 사업장의 위치에 따른 상업등기를 관리하는 관련 등기소(Registry Court)에서 신청해야 한다.
 - 필요한 서류가 등기소에 제출되면 2일(Working days) 이내에 등기돼야 한다.
- 기타 등록(Further registration) 절차: 등기절차가 완료되고 기업이 설립되면,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등록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 법인세 및 VAT를 위한 세적 등록
 - 사회보험등록
 - 건강보험등록
- 슬로바키아 상업등기소에 온라인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
 - www.orsr.sk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Self-employment)는 유한책임회사의 형태에 속하며,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적 특징은 유한책임회사와 같다.

기타

- 단순 주식회사(Simple Joint Stock Company)는 2017년에 새로 등록된 슬로바키아 법인의 형태로 일반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의 소규모 형태로 볼 수 있다. 최소 등록자본금은 1유로이고 각각의 주주들은 1센트의 자본을 출자하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단순 주식회사는 일반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보다 유연한 회사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등록 자본금이 없음.
-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 합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50유로 이상의 자본금을 등록해야 함.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Deloitte Slovakia

전화번호	+421 2 599 841 11
주소	Einsteinova 23, 851 01, Bratislava
홈페이지	https://www2.deloitte.com/sk/sk.html
이메일	hanearlko@deloittece.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유
비고	슬로바키아 내의 기아자동차 및 협력사의 회계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회사로, 한국인 회계사 1명이 근무하고 있음.

◦ KPMG 슬로바키아

전화번호	+421 2 582 491 11
주소	Dvořákova 10, 811 02 Bratislava
홈페이지	https://home.kpmg.com/sk/en/home.html
이메일	seongsoobae@kpmg.sk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유
비고	슬로바키아 내의 삼성전자 및 협력사의 회계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회사로, 한국인 회계사 1명이 근무하고 있음.

◦ bnt attorneys-at-law

전화번호	+421 2 578 800 88
주소	Cintorňská 2333/7, 811 08 Bratislava
홈페이지	https://www.bnt.eu/en/locations/slovakia
이메일	info.sk@bnt.eu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중유럽국가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10개국 네트워크를 보유한 법무법인으로 지역내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 하여 국가간 법무문제 해결에 장점이 있다.
----	--

◦ Moore BDR

전화번호	+421 918 423 120
주소	ernyševského 3427/26, 851 01 Petralka
홈페이지	https://www.moore-bdr.sk/en/
이메일	info.sk@bnt.eu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컨설팅, 회계, 세무, 법무 서비스 제공

<자료원 :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유로화는 1999년 1월 1일 유럽에서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의 통화가 됐다. 처음 3년간은 보이지 않는 통화로 회계 목적으로만 사용됐다. 전자 지불 유로화는 2002년 1월 1일까지 도입돼 고정 환율, 벨기에 프랑 및 독일 마르크와 같은 국가 통화의 지폐 및 동전을 대체했다.

오늘날 유로 지폐와 동전은 유로 지역 국가의 일부이거나 그와 관련된 도서, 영토 및 섬을 포함해 EU 회원국 27개국 중 19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입법권을 가진다. 이 국가들은 유로존(EURO ZONE)을 형성하고 있다. 안도라, 모나코, 산 마리노, 바티칸 시국의 마이크로 국가들도 유럽 공동체와의 공식 협약에 따라 유로화를 사용한다. 몬테네그로와 코소보도 마찬가지로 유로화를 사용하지만, 공식적인 합의는 없다. 슬로바키아는 공식적으로 2009년에 유로존에 가입했다.

- 유로존(EURO ZONE): 벨기에,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프랑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 유럽 단일결제협약(SEPA)에 의해 유로존 16개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및 EFTA 회원국(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과 모나코, 산마리노 내에서는 결제 시스템이 통합되어있다. 이에 따라 SEPA 공통 계좌번호(IBAN)로 계좌이체, 대금 카드 결제 등이 48시간 이내에 별도 수수료 없이 처리된다.

- 유럽연합 중앙은행은 1998년부터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외환 규제

- 슬로바키아에서 외환 자산 거래 또는 외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은 슬로바키아 국립 은행(National Bank of Slovakia)으로부터 외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외환 라이선스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합법적인 후계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외환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환법에 명시된 슬로바키아 국립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Slovakia)에 대한 몇 가지 통지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국경 간 자금 이동은 슬로바키아 국립 은행이나 인가된 외환 딜러(보통 은행) 또는 특별 지불 시스템을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 개인 계좌는 현지 비자 발급과 상관없이 개설할 수 있다. 계좌 개설에 필요한 것은 여권 및 국내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비자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기본증명서 등 국내 주소지가 표기된 서류의 영문 번역 후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를 이용하거나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운전면허증을 주슬로바키아 한국 대사관에서 영문 번역 영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서류를 이용할 수 있다. 여권과 국내 주소지가 표기된 서류(영문 번역 후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계좌개설을 해 사용할 수 있다.

- 기업 계좌 발급 시 필요서류는 기업 등록증(Extract from the Business Register)과 대표자 여권사본이다. 대표이사(법인장) 외 계좌 이용 시 사용할 서명을 등록하고자 하는 직원(CFO 등)이 별도로 있으면 해당 직원의 여권 사본도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Know Your Customer(KYC) 제도 때문에 국내에 본사가 있는 경우 본사의 주요 주주 내역 등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내에 본사가 없는 경우에는 현지 설립된 기업의 주주 사항만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기입해 제출하면 된다.

- 개인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의 장기비자를 소지한 개인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단기 비자 소지자는 대출이 제한된다. 장기비자를 소지한 개인은 슬로바키아 내 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 등을 이용해 아파트 등 주택 구매를 할 수 있다. 주택담보 대출 시 구입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모기지론의 최장 기간은 30년이며 대출기간은 신청자의 나이에 따라 변동된다. 대출 가능 연령은 65세까지로 만약 신청자가 50세이면 대출 가능 기간은 최장 15년이다. 35세 이하의 신청자가 최대 30년

까지의 대출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가능 금액은 구입가격의 80%와 월 대출 분할 상환금액이 월 소득(급여)의 50% 이하로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금액이 산정된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금액이 10만 유로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8만 유로고 대출기간이 10년인 경우 월 분할 상환 금액은 (원금 및 이자) 약 700유로이다. 이 경우 월수입이 1,400유로 이상일 경우 8만 유로 대출이 가능하다. 즉 담보인정비율 80% 및 월 소득금액이 대출 산정의 주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적용되는 대출금리 범위는 연 1.15 - 2.29% 수준이고 보통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하면 시중금리 상황에 따라 대출금리가 재산정된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 = 0.95유로(2022년 5월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1,225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1,057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4
비고	2022년 1월부터 최저 임금이 상승해 한달 최저 임금은 646유로,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일 8시간, 주5일근무, 만근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 시급은 약 3.713유로이다. 슬로바키아 통계청은 대졸 사무직 초임 통계를 산출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사무직의 평균임금이 1,331달러, 일반적인 기술생산직의 평균임금이 1,185달러에 해당한다.				

<자료원 : 슬로바키아 통계청>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슬로바키아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계약은 크게 계약직(definite period)과 정규직(indefinite) 계약으로 나뉘며 계약직 노동자와의 고용계약은 최장 2년이고, 그 기간 내에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계약직 고용계약을 할 때는 해당 직종이 계약직이라는 것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근로시간

슬로바키아 노동법(Slovak Labor Code)은 기본적으로 주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며 최대 근무 시간을 업종별 차등 규정하고 있다.

- 업종별 최대 근무시간
 - 일반 직종의 최대 근무시간은 40시간이다.
 - 2교대 직종의 최대 근무시간은 38.75시간이다
 - 3교대 직종의 최대 근무시간은 37.5시간이다
- 업무 시간 외 근무 추가 수당
 - 평일 초과근무는 평균임금의 25% 추가
 - 공휴일에는 평균임금의 100% 추가
 - 토요일 수당은 최저 시급의 50% 추가
 - 일요일 수당은 최저 시급의 100% 추가

휴가

고용주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노동자는 60일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년에 4주(20일)의 유급 휴가가 인정되며, 만일 노동자가 33세가 되는 해부터는 5주(25일)이 된다. 2020년 개정된 노동법에 따르면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연 2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휴가 동안의 급여는 종업원의 직전 분기 평균 급여에 근거해 산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22년 1월에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휴가일 수만큼의 급여는 2021년 4분기 근로자의 평균 급여에 의하여 일할 계산된다.

슬로바키아는 연말에 상여급 및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며, 지급하는 경우 슬로바키아 정부가 이 금액에 대해서 50%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슬로바키아 근로자는 매년 1월에 휴가를 길게 사용하길 원한다.

피고용자는 연간 최대 7일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이상의 병가는 무급 병가로 처리된다. 다만,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거나 가족의 입원으로 4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의사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고용인은 총 급여의 70%까지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주가 아닌 보험사에서 제공한다. 피고용자 개인을 위한 유급병가 7일 외에 가족을 위해 병원에 가게 되면 연중 유급병가 7일을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의 개념은 우리나라와 달리 동거하는 혈육 및 혈육의 가족으로 넓은 범위로 인정되고 있다.

해고

2021년 기준 슬로바키아 노동법에 따르면 계약해지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 상호합의

◦ 즉시 해고: 즉시 해고는 종업원이 고의적인 범죄를 저질러 법률 형을 받은 경우 혹은 업무규칙의 심각한 위배가 있었던 경우 등을 포함해 노동법에 명시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되어서는 안 됨. 해당 이슈를 알게 된 후 2달 이내에 또는 늦어도 1년 내에는 해고해야 함.

◦ 유예기간의 종료(termination in the probationary period): 노동자의 유예기간(probationary period) 동안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 계약 해지 3일 전에는 상호 통보해야 함.

◦ 통보(notice): 통보는 고용주와 고용인 측 모두 서면으로 작성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고용인은 아무런 제제 없이 통보할 수 있지만, 고용인의 계약해지 통보는 슬로바키아 노동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함. 통보 기간은 노동자의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준은 아래와 같음.

- 노동자의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1달 전에는 통보해야 함.
- 노동자가 1년 이상 5년 이하로 근무했을 경우에는 2달 전에 통보해야 함.
- 노동자가 5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에는 3달 전에 통보해야 함.

퇴직금

슬로바키아 노동법은 별도의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없음.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고용주가 고용인의 급여의 10%를 부담하고 고용인은 4%를 부담한다. 이 보험을 통해 슬로바키아 내의 공립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고용주가 고용인의 급여의 1%를 부담하고 고용인 역시 1%를 부담한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고용인의 급여의 0.8%를 부담하고 고용인은 산재보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고용주가 고용인의 급여의 14%를 부담하고 고용인은 4%를 부담한다.

기타

1) 외국인 개인사업자의 사회보장제도

외국인 개인사업자, 혹은 자영업자는 슬로바키아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만 18세 이상의 자연인을 의미한다. 외국인 자영업자는 슬로바키아 내국인 자영업자와 동등한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은 사회보험기관(Social Insurance Agency)에 개인이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의무적으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개인사업자가 최초의 필수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후 20일 이내에 사회보험기관에서는 서면으로 개인사업자에게 필수 사회 보장제도에 가입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들의 사회보장제는 매년 7월 1일에 갱신되며 납부해야 할 사회보장세는 국민연금 18%, 건강보험 4.4% 등이 있다.

2) 한국-슬로바키아 사회보장 협정에 따른 현지 보험료 면제

슬로바키아에서 일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한국-슬로바키아 사회보장 협정이 2010년 3월 1일부로 발효돼, 현지 투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본사에서 파견된 인력의 월 급여에서 부담해 온 슬로바키아의 사회보험료 중 연금보험료 24%, 산재보험료 0.8% 및 실업보험료 2% 등 총 26.8%(고용주 부담 18.8%, 근로자 부담 8%)의 현지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 법인세의 세율
 - 법인세율은 21%이며 차입증명서, 투자 바우처 등은 원천징수 과세 대상으로 19%의 세금이 부과된다.
 - 과세소득이 과세기간 당 49,790유로 이하인 경우 15%로 할인된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 주식배당금 역시 원천징수 과세 대상으로 7%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 슬로바키아 법인세의 특징
 - 2014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세무면허(Tax license) 제도는 2018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 법인세의 사전과세가 이루어지는데, 전년도 납부한 세금이 2,500유로에서 16,600유로 사이이면 월별 납부해야 하며 16,600유로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별 납부해야 한다.
- 슬로바키아 법인세 변동 움직임
 - 2021년 11월 슬 경제부는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19%로 인하하는 개혁안을 제시하였고, 2022년 9월 기준 개혁안 채택 심의중이다.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의 세율
 - 연소득이 37,163.36유로 미만인 소득에 대해서는 19% 과세율이 적용된다.
 - 연소득이 37,163.36유로 이상인 소득에 대해서는 25% 과세율이 적용된다.
 - 자산을 통해 얻은 수입인 자본소득에는 19%의 고정 세율이 적용된다.
 - 2004년 1월 1일부터 파생된 2004년 이전 이익과 배당금으로 배당금 수입은 7%의 세금이 부과된다. (배당금이 비 협력 국가의 외국 공급원의 경우 35%가 적용됨)
- 슬로바키아 개인 소득세의 특징
 - 개인소득세 징수 대상자는 원천징수 수입을 제외한 다른 수입에 대해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소득신고 및 소득세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세율
 -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에 기본 세율인 20%가 적용된다.
 - 육류, 생선, 우유 및 빵류, 서적 등 일부 식품 등을 포함한 인하세율은 10%가 적용된다.
 - 수출 항목은 부가가치세 면제된다.
- 슬로바키아 부가가치세의 특징
 - 부가가치세 환급일은 매월, 혹은 분기별 25일이다.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자영업자의 연소득과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서 상이하다.
- 슬로바키아 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자영업자 중 연간매출이 49,790유로 이하인 소규모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에서 벗어나나, 그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 다른 유럽연합 국가와 거래를 하는 자영업자는 연 매출이 14,000유로를 초과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 슬로바키아에 등록된 사무실이 없는 제3국의 외국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등록이 필수사항이고, 대리납부는 불가하다.

특별소비세

- 슬로바키아는 고가의 재화에 별도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51.40센트, 경유는 리터당 36.80센트의 세금이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부과되어 있다.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슬로바키아는 산업재산권청에서 관리하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 문화부에서 관리하는 저작권법 등 개별 법령을 두어 각각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한편,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발명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신규하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특허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진보성이 요구되는 것과 달리 실용신안은 진보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인데 비해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4년이고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슬로바키아는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행정 승인 절차를 거친 모든 의약품 또는 식물 보호 제품에 대해 추가 보호 인증서를 부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품 자체 또는 장식의 선, 윤곽, 색상, 모양, 질감 또는 재료의 특징 때문에 제품 전체 또는 일부의 모양은 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다.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등록 후 5년까지이고 25년 한도로 5년씩 갱신 가능하다.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기호, 성명을 포함하는 문자, 디자인, 문자, 숫자, 상품의 모양 또는 포장의 모양 등으로 구성된 표장으로, 이러한 표장은 특정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상호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상표로 보호될 수 있고,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슬로바키아는 저작자의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활동의 독특한 결과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한다. 슬로바키아의 저작권의 경제적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슬로바키아는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 (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 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Property Rights Alliance 조사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지적재산권 보호인식, 특허, 저작권, 상표 보호 분야에서 5.999점으로 전세계 129개국 중 38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0.602점 하락한 점수다.

9. 청산 및 철수

청산 및 철수

▣ 법인의 청산

○ 법인의 청산은 자발적 소멸로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주주총회 결의 → 법원 신청(청산법인으로 명칭 “- in liquidation” 변경) 및 청산인 선임 → 재무제표의 신고 → 3개월 이상의 채권자 등을 위한 공고 및 고지 → 자산처분 → 청산완료 및 재무제표 등 작성 → 재무제표 등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 세무기관 법인세신고서 제출 → 세무기관의 승인 → 부가세 해지 신청 → 법원에 등록말소 신청을 해 소멸에 이르게 된다.

○ 법인 청산의 세부 단계

- (회사의 청산 결의) 사원총회에서 청산결의를 통해 청산 절차에 돌입함. 청산 결의 시 청산결의에 관한 사항, 청산 개시일 및 청산인 선임을 함께 의결함

- (청산재무제표 작성, 법인세 신고 및 납부)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청산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별도의 회계연도를 구성함. 청산회사는 청산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개시일 기준 재무제표 작성 및 과세당국 제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다.

- (청산 및 청산인 등기) 사원총회 청산결의 의사록을 근거로 청산절차 개시 및 청산인 등기 신청

- (청산개시 공고) 회사가 청산절차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을 3개월간 Commercial Bulletin에 공고함. 공고 기간 동안에는 회사의 청산 절차를 완료할 수 없다.

- (Trade office에 청산 개시 신고) 회사의 청산 개시 및 청산인에 관한 정보를 Trade office에 신고

- (세무서에 청산 개시 신고 및 부가가치세 등록 말소 신청) 회사의 청산 개시 사실, 최종 과세기간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또한 부가가치세 등록 말소를 신청하고 등록카드를 세무서에 반납한다.

- (청산완료 보고서 등 작성) 청산개시 공고기간이 만료, 잔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회사가 실질적인 휴면상태에 돌입하면 청산인은

청산완료 보고서, 잔여재산 분배안을 작성한다.

- (해산 재무제표 작성) 청산 개시일로부터 완료일까지의 청산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해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사원총회 해산 결의)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청산인의 청산완료 보고서, 잔여재산 분배안, 해산재무제표를 승인함으로써 회사는 해산한다.
- (세무 등록카드 반납) 회사는 해산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세무 등록카드 (Tax Registration Card)을 세무서에 반납한다.
- (법인세 신고 및 납부) 해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회계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한다.
- (세무서 등의 등기말소 허가 요청)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관세청에 회사의 해산 사실을 신고하고, 등기말소 허가를 요청한다.
- (회사의 등기말소) 유관기관의 등기말소 허가를 득한 후 관할 등기소에 회사의 등기말소를 신청. 등기말소가 완료되면 회사의 청산 및 해산절차가 완료된다.

▣ 법인의 파산

○ 파산은 비자발적 소멸로서 채권자, 회사 본인 및 청산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변제능력 또는 채무초과 상태를 형식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리게 된다. 파산회사는 명칭이 “- in bankruptcy”로 변경되며 행위에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각종 집행 행위 등으로부터 면제를 받는 반사이익을 누린다. 이후 법원은 변제능력에 대해 채무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한 후 실질적 파산 결정을 내리거나 임의적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채권자 신고, 채권자집회, 자산처분 및 배분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회사를 소멸시킨다.

○ 파산은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게 경제적 제재가 가해지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파산하는 법인(채무자)의 대표는 채무초과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2,500유로의 범위에서 자본금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이 대표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년간 해당 법인(채무자) 및 다른 법인의 대표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슬로바키아 형법에는 파산상태 또는 파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범죄가 있다.

- 사기 파산(Fraudulent insolvency)
- 도산 불능(Culpable insolvency)
- 채권자의 사기 양도(Fraudulent conveyance of a creditor)
- 채권자의 사기 선호(Fraudulent preference of a creditor)
- 재무 및 비즈니스 기록의 왜곡(Distortion of data in financial and business records)
- 파산 또는 구조조정 중 기만적 행위(Deceitful practices in bankruptcy or restructuring proceedings)
- 파산 또는 구조조정의 방해(Obstructing bankruptcy or restructuring proceedings)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특성

소비인구

2022년 9월 기준 슬로바키아의 인구는 총 5,465,543명으로 EU 회원국 27개국 중 인구 규모로 19위의 작은 나라이다.

2021년 슬로바키아의 명목 기준 국가 총 GDP는 1,021억 달러, 인당 GDP는 2만 달러 수준이다. 2008년부터 유로존에 가입하여 중유럽 비셰그라드 4국(V4) 중 유일하게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다. 유로존 및 선진국 오스트리아와 인접한 영향으로 브라티슬라바의 물가는 현지화를 쓰는 바르샤바, 프라하, 부다페스트 도시보다 높다. 또한, 지역별 소득수준의 편차가 심하여 수도 브라티슬라바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 슬로바키아(브라티슬라바주, 트르나바주, 니트라주)는 소득수준이 중부(질리나, 반스카비스트리차 주) 또는 동부(프레쇼브, 코시체 주)보다 현저히 높다.

슬로바키아는 과거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시기에 주로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던 지역으로 2000년대부터 빠르게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제조업을 발달시켰다. 농업국가의 구조에 주로 교외지역에 제조업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대도시가 발달하지 않았다.

<자료원 : 슬로바키아 통계청>

소비 성향

○ 슬로바키아는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하는 지역(Region, Kraj) 기준으로 총 8개의 자치주로 나뉘어 있다. 2020년 슬로바키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슬로바키아의 가계 소비는 국가 평균 374,08유로/월이며, 수도가 위치한 브라티슬라바주는 453.01유로로 최고수준을 보이며, 동부에 위치한 프레쇼브주가 318.51유로로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

○ 인터넷 및 온라인 쇼핑의 발달 수준이 낮아 물건 대부분을 직접 구매하고 인터넷을 통한 상품구매는 전체 구매의 2% 수준에 해당한다. 다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용도는 높은 편으로 한국의 제품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들은 인터넷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 2021년 기준 슬로바키아에는 350만 명의 전자 상거래 사용자가 있으며 2022년까지 50만명이 추가로 온라인 쇼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400만 명의 전자 상거래 사용자는 전체 인구의 74%를 차지하며, 평균 사용자는 연간 온라인에서 미화 360달러를 소비하며 2022년에는 미화 400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슬로바키아 소비자는 여전히 오프라인 상점에서 물건을 확인하고 구매하기를 선호하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점의 영업이 제한되고, 자가격리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구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00만 개가 넘는 온라인 상품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가격정보사이트 Pricemania에 따르면, 코로나19전에는 연간 30% 수준의 방문자 수 증가율을 보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년 대비 방문객 수가 두 배로 증가했다.

한국 상품 이미지

○ 슬로바키아에 가장 많이 알려진 한국 상품은 자동차와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이며 이 분야에서 저렴하고 좋은 품질의 상품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제품의 가격이 구매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경우 일본의 브랜드 및 체코슬로바키아의 브랜드인 스코다와 직접 경쟁대상이다. 핸드폰의 경우, 아이폰은 가장 비싼 휴대전화로 인식되며 그 뒤로 한국의 휴대전화가 인지도가 있다. 대중적으로는 중국의 화웨이 휴대전화가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다. 이 외의 상품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소비재의 경우 일부 화장품이 저렴한 가격에 포장 및 디자인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어 일부 여성들은 한국산 화장품을 폴란드 등지에서 주문하여 사용하고 있다.

2020년부터 한국화장품을 수입 유통하는 회사가 늘고 있으며 주로 온라인 숍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 질리나 소재 기아자동차는 2021년 자동차 307,600대를 생산하였으며, 4백만 대 누적 생산을 달성하였다. 2006년 생산을 시작한 이래 2012년 100만대를 기록하고 3년마다 추가 100만대를 생산하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친 품질과 성능, 안전성과 기술이 유럽 내 성공의 요인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4세대 스포티지모델 생산을 중단하고, 5세대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 슬로바키아 내 2022년 7월 자동차 판매량은 6,221대로 전년 동기 대비 28% 이상 감소하였다. 점유율 1위는 Skoda(18.3%), 2위는 기아(13.9%), 3위는 현대(12.7%) 순으로 집계된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가격 및 인도조건

◦ 여러 가지 경우에 대비한 가격 준비: 가격은 FOB, CIF 등 다양한 가격을 준비하고 수량에 대해서도 LCL의 경우 Container 패킹을 감안하여 수량, 가격 등 바이어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여 면담 현장에서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슬로바키아 대부분의 회사가 EU 내의 거래에 익숙하므로 수출거래 시에도 관부가세 납부 조건(DDP)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송비와 관부가세를 고려하여 가격 협상을 해야 한다. 수출거래 시 우리 기업은 USD 대금결제에 익숙하나 현지 기업들은 리스크 회피와 거래의 편의성 때문에 EUR 거래를 선호하므로 주거래 은행에 거래 통화에 따른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선진국형 가격 준비: 대부분의 무역상거래와는 다르게 여러 차례의 가격 협상이 없는 편이다. 따라서 처음 제시하는 가격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격을 변경하는 전략은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2) 견적서류 포맷 준비

미스 타이핑이나 주요 거래조건을 빠뜨리지 않도록 미리 잘 다듬어진 표준 견적양식을 준비하고 가격 및 특수조건만 상담 현장에서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같이 잘 준비된 거래양식은 상담 현장에서 계약 체결을 가능케 한다.

3) 소규모 시장

슬로바키아는 한국 면적의 1/4이고 인구도 540만 수준의 작은 국가로, 미국이나 중국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시장임을 감안해야 한다. 처음 미팅부터 바이어에게 수량에 대해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 상담 준비물 사전 준비

미팅에 참가하는 상담요원은 명함과 카탈로그 등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한다. 또 샘플을 제대로 준비해오지 않아서 정작 바이어가 찾는 샘플은 보여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경우도 생긴다. 샘플을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영어로 상담자료 준비

상담에 필요한 장치물이나 카탈로그 및 상담자료 등이 한국어로 된 것을 그대로 해외 상담회에 가져와서 사용하는 업체들을 자주 보게 된다. 바이어들은 한국어로 된 카탈로그를 접할 경우 무성의하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또 영문으로 된 상담자료 없이 바이어들에게 일일이 구두로 설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수출상담을 위해서는 영문으로 작성된 상담 자료를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6) 통역원에 대한 사전 교육

슬로바키아는 교민 역사가 없으므로 상담요원 배치가 쉽지 않다. 현지 교포 자녀 및 현지 슬로바키아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로 통역이 진행되는 만큼 사전에 상품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상담회 당일, 상담회 개최 30분 전에 통역원에게 상품 설명과 함께 상담 준비를 시키는 것이 좋다.

7) 전자 카탈로그와 전자 견적 시스템을 활용

최근 들어 전자 카탈로그와 전자 견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국내 업체들이 늘고 있으며, 이 분야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한 분야이다. 상담 참가 시에 가져가는 샘플의 양은 한계가 있다. 일반 소비제품은 디자인이나 색상별로 다양하여 모든 샘플 전시가 어렵고 기계류는 중량품이기 때문에 보통 카탈로그 전시에 그치게 된다. 그러나 전자 카탈로그를 활용하면 회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고, 전자 견적 시스템에 의해 상담회 현장에서 즉각적인 오퍼가 가능하다.

8) 제품에 대해 완전히 숙지

해외 상담회에는 엔지니어보다는 영업부서 직원이 주로 상담요원으로 파견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기계류나 IT 분야의 경우 기계 작동법이나 IT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영업부서 직원들이 바이어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상담에 애로가 생기기도 한다. 필요하다면 영업부서 직원과 엔지니어가 함께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9) 샘플은 마지막 상담일에 처분

해외 시장개척단의 경우 일반적으로 3개 정도의 지역에서 상담회를 하는데, 첫 상담회에서 바이어와 상담이 잘되었다 해서 샘플과 카탈로그를 소진하여 다음 도시의 상담회에서는 샘플 없이 상담을 하는 업체가 있다. 가능한 마지막 상담이 끝날 때까지 가능한 샘플을 보유하고 필요시에는 추후에 귀국하여 바이어에게 샘플을 발송하도록 한다.

10) 사후 상담 Follow-Up에 집중

현지에서 상담을 잘하고 귀국 후 바이어가 아무리 접촉을 하려 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 업체들이 있다. 바이어는 상담을 추진하고 싶어하는데 연락을 끊어버리니 바이어에게 큰 실망을 주게 된다. 가격 조건이 맞지 않는든지 주문 물량이 적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단절하지 말고 바이어와 다시 협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슬로바키아 비즈니스맨들과 협정을 맺거나 할 때는 서면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은행을 통한 송금 시 상당히 지체된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지급 관련 협정은 가급적 지키도록 해야 한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약속 및 대화 시 유의사항

슬로바키아에서는 시간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을 훌 어기더라도 대개는 관대하게 받아들이곤 한다. 슬로바키아 비즈니스맨과 만날 때 항상 정중한 태도를 잃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고, 특히 간단한 접대(차나 술을 함께 들면서 담소를 나눔) 자리에서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작은 화젯거리라도 못 들은 척해서는 안 되며,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고 성심껏 대응하는 것이 좋다.

2) 호칭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이름(First Name)을 사용하라고 하지 않는 한 성(Last Name)으로 호칭하는 것이 좋다. 단, 영어 문화에 통용되는 이름과 유사한 이름이 많은 대신 성의 경우 순수 슬로바키아어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가능한 유사한 발음을 Mr., Mrs. 등의 호칭과 함께 불러주면 노력한다는 좋은 인상을 얻을 수 있다. 서면상 초대의를 쓸 때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는 직함과 이름을 함께 쓰면 된다. 명함도 일상적으로 사용되며 슬로바키아를 자주 방문한다면 슬로바키아어로 된 것을 준비해 두면 호의를 얻을 수 있다.

3) 접대 시 자리 배치

공식 행사의 경우 자리 배석에 엄격한 순서가 있다. 비즈니스 업무적 모임을 가질 때에도 슬로바키아 측 사람들의 상하관계를 고려해 자리 배치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에서 먼 쪽, 테이블의 중앙 쪽이 상석으로 간주된다.

4) 인사

인사를 할 때는 눈을 바로 바라보며 손에 힘을 주어 악수하는 것이 예의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힘이 들어간 악수는 적극적이고 솔직한 태도를 의미하므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힘이 약한 악수는 본인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눈을 쳐다보지 않는 것은 본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보통 소개할 때는 여성이 남성보다, 젊은이가 연장자보다 먼저 소개된다.

미팅 테이블에서는 본인을 위한 좌석이 준비돼 있을 수 있으니 인사 후 바로 앉지 않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미팅에서의 시간 준수는 엄격하게 지켜진다.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은 간결하되 정확하고 상세하게 준비돼야 하며, 필요하다면 본인의 의견을 지원하는 관련 도표 및 수치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5) 선물

선물의 경우 전통적으로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국화나 컬러 백합은 선물로 적합하지 않다. 또한, 선물은 전달된 후 바로 열어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 미팅에서 보통 선물은 하지 않지만 비즈니스 파트너의 나라를 대표하는 기념품(예: 한국의 문화에 관한 책, 슬로바키아에서 잘 볼 수 없는 한국의 전통문화 기념품 등)은 호의적인 표시가 될 수 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 판매자, 구매자를 가리지 않고 작은 선물은 하는 것은 호의를 표시하는 주요한 방법이다. 단, 값비싼 선물은 부담을 느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6) 비즈니스 미팅 선호 시간

심도 있는 비즈니스 미팅을 피해야 할 시기는 금요일로, 슬로바키아 사람들은 금요일 점심 이후 시외에 있는 사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금요일 오후에 미팅 스케줄을 잡지 않는 것이 좋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정부 기관의 민원처리 또한 멈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여름인 7, 8월에는 사업체들이 닫혀있거나 최소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현지 노동법상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서면 고지를 통해 2주간 휴가를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7~8월 기간에는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겨울철에는 크리스마스 연휴(12.24-26)가 3일간 지속되며, 이 연휴에 돌입하면 대부분의 슬로바키아 사람들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산장이나 스키리조트에서 여가를 보내기 때문에 다음 해 2월까지의 업무가 중단된다고 보면 된다.

7) 코로나19 관련 상담 유의 사항

2021년 연말까지 코로나 재유행으로 대면 비즈니스 미팅을 요청하는 일 자체가 실례가 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 다만 2022년 5월 기준 슬로바키아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제한조치가 대개 해제되었다. 다만 코로나 유행이 2년간 산발적으로 지속되면서 화상 상담이 일상화되었고, 비즈니스 추진 시 화상상담을 우선 제안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3. 주요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1) Alza (www.alza.sk) ○ 개요: Alza는 주로 체코, 슬로바키아, 그리고 2014년부터 다른 유럽 연합 국가에서 운영되는 전자 상거래 매장이다. 장난감, 취미,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향수, 시계 및 미용 부문에서 중부 유럽 최대의 온라인 소비자 전자 제품 소매업체이다. 같은 이름(Alza)을 사용하는 오프라인 매장 체인도 운영하고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Alza는 Alzasoft라는 명칭으로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2020년 매출액은 57,047,362 EUR이고, 직원 수는 약 250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장난감, 취미,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향수, 시계 및 미용제품 ○ 특징: Alza에는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전역에 매장과 AlzaBoxes(주문 수령)가 있다. 쇼룸은 프라하, 브라티슬라바, 부다페스트에만 있다. 고객은 내부 또는 AlzaDrive를 통해 전시장에서 주문을 수령할 수도 있다. 보증기간 연장, 60일 이내 반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기 고장 시 고객이 불만 처리를 기다리지 않고 새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선물 포장도 가능하다. 2) Internet Mall Slovakia s.r.o. (www.mall.sk) ○ 개요: Internet Mall Slovakia는 슬로바키아에서 가장 큰 인터넷 소매업체 중 하나로, NASPERS 및 MIH Allegro 지주회사에 속해 있으며, 슬로바키아 외에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또는 슬로베니아에서 운영 중이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05년에 설립되었으며, 2020년 기준 매출액은 106,381,829 EUR이고 직원 수는 약 50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전자 제품, 의류, 시계, 인테리어 장식품, 미용 제품 등 ○ 특징: 일정 금액 이상 무료 배송, 신속 배송 또는 고객이 선택한 우체국 등 다양한 장소에서 픽업이 가능하다. 배달 서비스에는 가전 제품 설치/ 기 설치 제품 제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할부 결제도 가능하며, 정부/기업의 경우 별도 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도 있다. 3) ELEKTROSPED, a. s. (www.hej.sk) ○ 개요: 전자제품 최대 전자상거래업체로 구매고객에 다양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슬로바키아와 체코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2020년 매출액은 131,273,949 EUR이고 직원 수는 약 320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소형 전자 제품, 가전 제품, 사진 장비, 컴퓨터, 정원 장비 등 ○ 특징: 다양한 전자 제품을 제공하며, 구매한 상품은 일반적으로 24시간 이내에 고객에게 배송된다. HEJHOUSE Bratislava 또는 슬로바키아 전역의 파트너 매장에서 직접 주문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4) Martinus, s.r.o. (www.martinus.sk) ○ 개요: Martinus는 슬로바키아 최대 온라인 서점이다. 책 판매 수, 참석자 수뿐만 아니라 책 보유량도 가장 많다. 약 30년 전 Martinus는 Martin에서 작은 서점으로 시작해 오늘날 슬로바키아 전역에 걸쳐 서점을 운영 중이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0년에 설립되었고, 2020년 매출액은 34,236,840 EUR, 직원 수는 약 190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서적, 기타 문구류 ○ 특징: 최대 서적 보유 및 2~3일 이내의 빠른 배송이 특징이다. 5) NAY a.s. (www.nay.sk) ○ 개요: 25%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슬로바키아 전자 제품 전문 소매업체이다. NAY Extra 클럽에는 915,000명 이상의 회원이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998년에 설립되었고, 2020년 판매량은 322,092,028 EUR이고 직원 수는 약 1,150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전자제품 전반 ○ 특징: 주문자의 집, 아파트, 객실까지 직접 상품을 배송한 후 포장을 풀거나 설치 후 청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은 저녁이나 주말에도 배송 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슬로바키아 전역으로 배송한다. 구형 기기를 수거해 재활용 처리하기도 한다.
--------------	--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슬로바키아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주로 삼성전자(2002년 진출)가 위치하는 갈란타(Galanta) 지역과 기아자동차(2004년 진출)가 위치하는 북쪽 질리나(Zilina) 지역으로 총 70여 개 업체가 진출해 있다. 질리나의 기아자동차가 2021년 기준 자동차 누적 판매량 4백만대를 발표함으로써 슬로바키아에서 우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 슬로바키아 진출 자동차부품 제조 A사
 - 2004년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생산법인과 대·중·소 동반진출로 슬로바키아 생산법인 설립
 - 초기 4~5년간 유럽의 규제에 맞춰 제품을 다양화(생산 제품 다양화, 제품당 단위 생산 감소)하는 과정에서 수익구조 악화
 - 생산 모델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유럽 지역에 납품처를 확대하고 노동력이 슬로바키아보다 저렴한 주변국에 생산 법인을 확장함으로써 유럽 내 밸류체인 구축
 - 유럽 OEM 등에 납품처 다변화로 수익성 확보 후 새로운 제품 현지 연구개발 착수, 2018년부터 유럽 내 안정적인 OEM 고객사 확보로 생산시설 확장(모로코, 세르비아 등)
- 슬로바키아 진출 난방자재 제조 B사
 - 2017년 무역사절단 사업을 통해 슬로바키아 바이어 P사와 첫 비즈니스 상담
 - 탄소나노기술을 활용한 가정용 교류전기(230v) 고효율 난방 자재로 바닥 난방이 흔하지 않은 유럽시장의 고급 아파트 수요에 대응, 중유럽(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에 건설자재를 유통하는 바이어와 독점계약 체결(2018)
 - ① 국민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하여 전기요금에 매우 비싼 지역, ② 유럽에 드문 산악 지형으로 겨울이 매우 추운 지역, ③ 많은 부분에서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하여 새로운 제품에 관한 관심이 없으나 유독 건강과 관련된 제품은 수용도가 높은 지역의 수요가 맞물려 성공한 사례
 - 2020년 독일 등 서유럽 시장, 북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정보 갱신 및 독점계약 확대
- 슬로바키아 진출 산업 소비재 제조 C사
 - 2018년 1분기 해외시장정보조사 서비스 - 사업파트너 연결서비스를 통해 슬로바키아 바이어 S사와 첫 접촉
 - 성공적인 이메일 소개 이후 2018년 2분기 해외출장지원서비스를 통해 슬로바키아에 출장 시행하여 바이어사와 미팅 후 샘플 발송
 - 바이어사는 샘플을 테스트(3개월간) 후 현지 및 독일 고객사에 제품 납품을 위해 본 주문 및 분기별 1 컨테이너 수준의 제품 거래
 - 주요 서유럽 산업재 소비자에 중개 판매를 통해 수요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
- 슬로바키아 진출 산업 의료기기 제조 D사
 - 2020년 4분기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상시화상상담회에 참가
 - 이후 무역관에서 지속적으로 양사 간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 1~2차 유행 중에도 국내기업의 슬로바키아 최초 수출에 성공함
 - 슬로바키아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 등 의료부문 발전 전략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의료기기 유망
- 슬로바키아 진출 자동차부품 제조 F사
 - 2006년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생산법인 협력사로 슬로바키아 생산법인 설립
 - 2021년 연중 슬 글로벌 자동차 OEM사와 수시 상담 및 구매계약 지원 (최초 지원 2019년 중동부유럽 자동차포럼 수출상담회)
 - 2021년 11월 기준 구매 계약 성사 및 2022년부터 생산 시작해 GVC 진입 성공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 슬로바키아 체류 비자 개요

법 No. 404/2011 Coll., 외국인의 거주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 거주법")은 슬로바키아 공화국에서 외국인의 체류를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이다. 외국인의 거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슬로바키아 공화국 시민이 아닌 모든 사람은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연방 국민의 거주는 특별 규정에 따라 규제된다. 제3국 국민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슬로바키아 공화국이나 연방의 시민이 아닌 사람이다. 따라서 다음 정보는 소위 제3국 국민에게만 적용된다.

2) 슬로바키아 체류 비자의 종류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다음 세 가지의 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임시 거주(Temporary Residence)
- 영주(Permanent Residence)
- 관용적 체류(Tolerated Residence)

임시 거주는 외국인 거주법에 명시된 목적(교육, 연구, 가족 상봉) 중 하나에 대하여 부여될 수 있다. 가족 상봉의 목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고 슬로바키아에서 수년간 계속 법적으로 거주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관용적 체류는 특별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외국인에게 예외적으로 부여될 수 있는 특별한 유형의 거주허가다.

◦ 쉥겐 조약(Schengen Treaty)

- EU 국가 간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1985년 룩셈부르크 쉥겐에서 이루어진 조약으로, 가입국 국민 및 가입국의 체류증 소지자는 별도의 비자 없이 쉥겐 지역에 속한 다른 국가들을 방문할 수 있다.

- 가입국은 EU에 속한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를 비롯해 비EU 국가인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총 26개국이다.

- EU 회원국이지만 쉥겐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불가리아, 루마니아, 사이프로스, 크로아티아는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 슬로바키아 무비자 90일 입국 및 체류 가능 여부는 여행자 개인이 쉥겐 지역에 최근 180일간 며칠을 체류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슬로바키아 입국 희망일로부터 180일 이전에 EU 쉥겐 지역에 체류한 날짜 수 더하기 입국 시점으로부터 체류예정기간의 총 체류일수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좀 더 자세한 설명과 체류 가능 일자 계산은 다음 외교부 영사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www.0404.go.kr/consulate/visa_treaty.jsp

3) 비자 신청 방법

신청자가 거주하는 국가 또는 시민권자의 국가에 대해 공인된 슬로바키아 공화국 대사관(외교 사절 또는 영사관)의 공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자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슬로바키아 여행 예정일 3개월 이내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

- (참고)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관
 - 주소: 서울 용산구 한남동 389-1번지
 - 전화번호: +82 27943981, +82 27945420
 - 팩스: +82 27943982
 - 이메일: emb.seoul@mzv.sk
 - 홈페이지: <https://www.mzv.sk/web/seoul-en/home>
- (참고) 슬로바키아 공화국 외교부의 비자 제도 안내
 - <https://www.mzv.sk/cestovanie-a-konzularne-info>

4) 비자 신청 구비서류

- 슬로바키아 공화국 체류 비자 신청서(작성 및 서명 완료)
- 증명사진, 3 x 3.5cm
- 유효한 여권(만료 기간 최소 3개월 이상 남은 여권)
- 거주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 조직/개인 관광: 여행사가 발행한 바우처 또는 초대장(발령장) 또는 외국 경찰국의 확인을 받은 초대장
 - 출장: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기관이 발행한 초청장(발령장) 또는 외국 경찰국이 확인한 초청장을 반복적으로 출장하는 경우 슬로바키아 회사와 협력 계약 체결
 - 국제 대회, 세미나, 심포지엄, 문화 및 스포츠 행사: 행사 주최자가 발행한 초청장, 직원을 위한 비자 발급을 요청하는 발송 기관의 공식 서한, 무역 박람회 입장료, 회의 또는 기타 행사
 - 기타 목적: 슬로바키아 여행 및 거주 목적을 확인하는 기타 서류
- 항공권 또는 기타 서류: 왕복 항공권(항공권, 버스/기차 티켓, 공개 항공권이 아닐 수 있음), 자동차로 여행하는 경우 운전 면허증 및 차량 등록증, 영주권(제 3자 책임 보험)
- 숙소를 증명하는 서류(호텔 예약 내역 또는 주거지 계약서, 임시거주의 경우 호텔 또는 집주인의 확인서 포함)
- 주거지 당 적어도 56유로 이상의 재정적 수단 증명 서류
 - 신청자는 슬로바키아 국경에서 비자로 진출한 체류 동안 충분한 재정적 수단을 증명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재정 보증 증명 서류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 국제 여행 의료보험: 의료상의 이유로 본국 송환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용, 긴급 의료 처치 또는 응급 병원 치료를 포함해야 한다. 보험은 모든 쉥겐 회원국에서 유효해야 한다. 최소 보험료는 30,000유로여야 한다.
- 기타 서류: 대사관은 여행의 목적을 명시하고 출신국으로 돌아갈 의사를 증명할 목적으로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5) 코로나19 관련 슬로바키아 입국 시 유의사항 ('22.9월 기준)

- 슬로바키아 입국시 부과되던 사전등록, 자가격리, 코로나19 검사 의무 등 코로나19 관련 입국제한조치가 2022년 4월 6일부터 전면 폐지됨
-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항을 경유하여 슬로바키아로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방역지침 준수 및 경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어, 오스트리아대사관 입국관련 공지사항을 참조 요망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 비EU국가에서 EU 국가로 입국 시 휴대하는 물품이 상업적 성격이 없는 경우(no commercial character) 아래의 범위에서 관세와 부가세, 소비세 부담이 없다.

- 물품의 반입이 가끔 이루어지며 여행자 개인 또는 가족의 사용을 위한 것 또는 선물용으로 의도되는 경우 상업적 성격이 없는 것으로 고려된다.

- (담배제품) cigarette 200개 (또는 40개) 또는, cigarillo 100개 (또는 20개) 또는, cigar 50개 (또는 10개) 또는, tobacco 250그램 (또는 smoking tobacco 50그램)

- (알코올음료) 22% vol. 초과 알코올과 알코올음료 1리터 또는 22% vol. 이하 알코올과 알코올음료 2리터. 이외에 추가로 와인(still wine) 4리터, 맥주 16리터.

* 담배와 알코올음료에 관한 기준은 17세 미만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향수, 커피 등 기타 물품) 항공과 해상을 통한 여행객이 경우 430유로 상당, 기타 여행객의 경우 300유로 상당의 물품

○ 개별품목에 대한 가치는 분할 할 수 없으며, 개인 수하물 가방이나 개인용의 의약품 가치는 상기 금액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 EU 회원국은 상기 금액기준을 15세 미만에 대하여는 150유로로 축소할 수 있다.

- 위의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와 관세는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적용한다.

○ 다만, 휴대품이 상기 면세기준을 충족해도 EU나 회원국의 특정규정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가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기타 제한조치들

- (동물제품)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여행자는 고기와 고기제품(meat and meat products), 우유와 우유 제품(milk and milk products)을 반입할 수 없다.

- (CITES 물품) 워싱턴 협약(the Convention of Washington(CITES))에 의해 보호되는 야생동식물과 그 부분품의 반입은 동 협약 이행규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 협약이행을 위한 EU 규정(the EU Wildlife Trade Regulation) 부속서 A 품목은 반·출입이 금지되고, 부속서 B·C 품목은 관련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 (애완동물)애완동물(pets)을 동반할 때는 관련 EU 규정에 따라야 한다.

- (반입제한물품) 마약류, 의약품, 무기류, 폭발물, 음란물 등에 대하여는 각 회원국 국내법령에 따라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 (만유로 이상 현금) EU를 출입(entering or leaving)하는 여행자가 10,000유로 이상의 현금(동등한 가치의 다른 통화 또는 현금화가 쉬운 수표 등)을 휴대하는 경우 세관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슬로바키아 한국 대사관

전화번호	+421 2 3307 0711
주소	Sturova 16, 811 02 Bratislava, Slovak Republic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sk-ko/index.do

◦ 한국 산업은행(KDB) 슬로바키아 지점

전화번호	+421 2 3211 6880
주소	Obchodna 2, 811 06, Bratislava, Slovak Republic
홈페이지	http://sk.kdbbank.eu/
비고	한국산업은행(KDB) 슬로바키아 지점. 한국산업은행 유럽 본점은 부다페스트에 위치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슬로바키아 대통령실

전화번호	+421 2 5933 3382
주소	Hodzovo namestie 2978/1, 810 00, Bratislava
홈페이지	http://www.prezident.sk

◦ 슬로바키아 정부

전화번호	+421 2 2092 5111
주소	Namestie slobody 1, 813 70, Bratislava
홈페이지	https://www.vlada.gov.sk/

◦ 슬로바키아 국회

전화번호	+421 2 5972 2463
------	------------------

주소	Namestie Alexandra Dubceka 4809/1, 811 01, Bratislava
홈페이지	https://www.nrsr.sk/web/

○ 슬로바키아 통계청

전화번호	+421 2 5023 6222
주소	Mileticova 3/a, 821 08, Ruzinov, Bratislava
홈페이지	https://slovak.statistics.sk/

○ 슬로바키아 자동차산업협회(ZAP)

전화번호	+421 2 4364 2235
주소	Bojnicka 2977/3, 831 04, Bratislava
홈페이지	https://www.zapsr.sk

○ 슬로바키아 경제신문(MAFRA Slovakia)

전화번호	+421 2 4823 8111
주소	Nobelova 1303/34, 836 05 Nove Mesto
홈페이지	https://mafraslovakia.hnonline.sk/

○ 슬로바키아 영자신문(The Slovak Spectator)

전화번호	+421 2 59 233 300
주소	Lazaretská 2333/12, 811 08 Bratislava
홈페이지	https://spectator.sme.sk/
비고	spectator@spectator.sk

○ 슬로바키아 무역투자진흥원(SARIO)

전화번호	+421 2 582 601 00
주소	Trnavská cesta 486/100, 821 01 Bratislava
홈페이지	https://www.sario.sk/
비고	슬로바키아에서 한국의 KOTRA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슬로바키아 경제부 산하기관이다. 크게 슬로바키아 기업의 수출 지원, 외국인 투자가 유치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슬로바키아 전략정책 연구소(STRATPOL)

전화번호	+421 908 327 491
주소	Štúrova 3, 81102 Bratislava
홈페이지	https://stratpol.sk/
비고	슬로바키아와 EU, V4, 북아메리카 등과 국제관계 및 안보 등을 주로 연구한다.

○ 슬로바키아 IT산업 협회

전화번호	+421 907 708 092
주소	Nivy Tower Mlynské nivy 5 811 09 Bratislava
홈페이지	https://www.itas.sk
비고	ITAS는 슬로바키아 IT 산업 리더들의 협력 플랫폼으로, 슬로바키아 자동차산업 협회 다음으로 많은 회원사를 보유한 기관이다. 혁신적인 IT 환경을 조성하고 더욱 선진국을 건설하여 디지털 기술의 글로벌지도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슬로바키아 의료기기 공급업체 협회(SK+MED)

전화번호	+421 914 120 718
주소	Seberíniho 9, 821 03, Bratislava
홈페이지	http://skmed.sk/
비고	SK+MED 는 민간 협회사로 1999년에 설립되었다. 협회는 회원사가 거래하는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슬로바키아 의료 제도의 현 상황, 해외 의료 기술 개발의 최신 경향까지 신뢰할 수 있고 전문적인 정보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료원 :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1.04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밀(meal)	5.280
2	식품	비빔밥	1인분	15.380
3	식품	김치찌개 백반	1인분	14.420
4	식품	신라면	1봉지	2.40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3.360
6	음료	생수(마트, 최저가)	500ml	1.31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1.920
8	의료	항생제	12정	3.600
9	교통	시내버스 요금	기본요금	1.300
10	교통	지하철 요금	기본요금	0.000
11	교통	택시 요금	기본요금	4.060
12	서비스	헤어컷(시내 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19.23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570
14	서비스	전기 요금	1Kwh	0.160
15	서비스	영화 입장권	일반	8.530
16	여가	담배(말보로 라이트)	1갑	3.930
17	여가	소주(한식당 내 판매 최저가)	360ml	13.500
18	임금	최저임금	법정최저	621.00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21826.0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1.250

<자료원 :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슬로바키아는 유럽연합 27개국 회원국 중 하나로 2009년 1월 1일 일자로 유럽연합의 공통 화폐 유로(EURO)를 사용한다. 발행은 슬로바키아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

- 지폐는 € 5, € 10, € 20, € 50, € 100, € 200, € 500 총 7종류가 있다.

- 동전은 1cent, 2cent, 5cent, 10cent, 20cent, 50cent, € 1, € 2, 총 8종류가 있다.

* 2020년 6월, 슬로바키아 의회에서 1, 2cent 동전이 소매 및 은행의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이유로 순환을 중지시키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22년 5월 현재까지 유통되고 있음

환전방법

슬로바키아 내의 환전은 공항, 기차역, 주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영업시간(08:00~17:00) 중 가능하며 개별 환전소가 제시한 환율에 의해 환전할 수 있다.

현지 은행이 제공하는 환율로 환전하기 위해서는 주요 은행(CSOB, VUB Banka, TATRA Banka 등) 지점을 이용하거나 각 은행 지점 앞 또는 시내 주요 지점에 설치된 무인은행창구(ATM, 슬로바키아어 BANKOMAT)를 이용하여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현금(EURO)을 인출할 수 있다. 이때 인출 시마다 일정 비율로 KRW→USD, USD→EUR의 환전수수료 및 은행 거래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통화 및 환율 적용 선택에 유의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

◦ 2020년 1월부터 모든 상점 및 호텔, 레스토랑에서 카드 및 현금 결제가 모두 가능하도록 의무화되어 대부분의 가게, 호텔, 레스토랑에서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나 일부 상점은 현금만 받는 경우가 있다.

◦ 현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드물고 신용카드를 포함한 은행의 금융상품이 발달하여 있지 않다. 대부분의 시민은 직불카드(체크카드, debit card)를 사용하며, 신용카드는 PIN 없이 결제한 뒤 영수증에 서명하고 가게에 1부를 제출해야 한다. Master 및 Visa 카드는 널리 쓰이고 있으며 여행객이 많이 다니는 호텔과 관광지에서는 Diner Club과 American Express, UNIPAY 등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교통

교통상황

◦ 슬로바키아의 수도인 브라티슬라바는 매일 다른 지역에서 출근하는 유동 인구가 많아 통근시간 때에는 교통체증이 심한 편이다. 평일 아침 8~9시에 시내 방향, 오후 3~5시에 교외 방향으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하며 평소 소요시간의 두 배 이상 소요되는 일이 빈번하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일반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13시경부터 수도에서 지방으로(동쪽) 빠져나가는 고속도로의 정체가 심하게 일어나 50km 떨어진 도시로 가는데에 3~4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 브라티슬라바 시내에는 총 5개 노선의 트램과 11개 노선의 트롤리버스(전차와 같이 전기동력이 버스 위에 연결된 버스), 그리고 총 61개의 버스와 3개의 야간버스 노선이 운행된다. 각 노선의 운행시간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imhd.sk/ba/schedules-timetables>

◦ 2020년부터 전동스쿠터 Bolt가 운영되고 있어 시내 단거리 이동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Bolt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안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버스

◦ 버스표 구입 방법

브라티슬라바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탑승 전 무조건 표를 구입해야 하며 버스나 트램 내에서 요금을 낼 수는 없다. 티켓은 버스 정류장 앞에 비치된 노란색 기계에 동전을 넣으면 구입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계도 있다. 버스와 트램 이용권은 통합되어 있다.

◦ 대중교통 요금

대중교통 요금은 1) 본인이 여행하고 싶은 목적지의 구역(zone)과 2) 목적지까지의 도달 시간을 계산해서 구입하면 된다.

브라티슬라바는 크게 10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구역의 숫자가 커지고, 그에 따라 표 요금도 비싸진다. 대부분은 2구역 티켓을 사면 브라티슬라바 내의 주요 관광지에도 도착할 수 있다. 2구역 내의 버스표 가격은 15분 표는 0.7유로이며 30분 티켓은 0.9유로이다. 따라서 같은 목적지를 가고자 할 때에도 교통체증이 심할 것 같은 시간대에는 유효기간이 30분인 티켓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버스 운행시간

버스 운행시간은 대략 5시에서 시작해 23시 30분까지이며 이후 야간운행을 하는 버스도 있다. 야간버스는 버스 번호 앞에 N이 붙어 있으며, 브라티슬라바 내 총 3개의 노선이 운행 중이다. 다음날 2시경까지 운행된다.

◦ 버스 이용 시 유의사항

버스나 트램을 타고나서는 기계에 편칭해야 하며 티켓 하단에 탑승시간이 프린트된다. 전수 검표는 하지 않으며 불시로 경찰이 티켓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탑승권이 없거나 탑승시각이 탑승권에 찍혀있지 않으면 벌금이 50유로이므로 꼭 본인의 구역과 예상 도착시각을 계산에서 알맞은 티켓을 구입하고 승차 시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택시

현지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아래와 같다.

◦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 이용: 슬로바키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은 Uber, Bolt(구 Taxify), Hopin 등이 있다. 어플리케이션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연동시키고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예상 요금을 알 수 있다. 또는 현금 결제로 설정할 경우 목적지 도착 시 현지 통화인 유로화로 기사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장거리 이동의 경우 BlaBlaCar라는 어플을 통해 카풀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할 수 있다.

◦ 호텔 프론트에 문의하기

◦ 시내 중심가의 택시 이용하기: 시내 중심가에 대기 중인 택시는 대기상태 동안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므로 가능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할 경우 목적지를 기사에게 말하고 금액을 사전에 합의한 후 승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기 중인 택시는 콜택시에 비해 일반적으로 두 배 이상 비싸다).

◦ 콜택시 이용하기: 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콜택시는 AA Taxi Euro, s.r.o.(☎16 022), Taxi SUPER(☎16 616), Correct Taxi(☎0902 66 70 70), Taxi Bratislava Profi(☎16 222) 등이 있고, 해당 번호를 호출하면 안내원이 나오며 대부분 영어 구사가 가능하다.

다. 통신

핸드폰

슬로바키아의 대표적인 통신사는 Orange, Telekom, O2 등이 있다. 슬로바키아에서 구입한 유심은 대다수의 경우 로밍 없이 타 유럽국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나 통신사 혹은 요금제별로 규정이 상이하여 각 사이트를 통해 요율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통신사별 유심칩 구입 방법과 선불제 요금(prepaid plan)은 아래와 같다.

◦ Orange

- Orange 통신사는 슬로바키아 내 가장 많은 회선(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 선불 유심칩은 시내 곳곳에 있는 Orange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고 유심칩의 가격은 10유로이다. 유심칩을 구입할 때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 선불 요금제 유심칩은 “Prima”라고 불리며 유심칩을 구입할 때 크레딧을 함께 충전하면 된다.
- 요금은 30일 기준, 2.5GB, 8유로이다.

◦ Telekom

- Telekom은 독일계 기업으로 슬로바키아의 대표적인 통신사 중의 하나다. 슬로바키아 통신사 중 가장 넓은 LTE 광역망을 가지고 있다.
- 선불 유심칩은 “Easy”라고 불리며 9유로로 크레딧을 별도로 충전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 슬로바키아의 대표적인 식료품점 TESCO에서도 유심칩을 구입할 수 있다.

인터넷(와이파이)

도시 내 주요 호텔, 식당, 카페에서는 무료로 와이파이를 제공한다.

라. 관광명소

◦ 브라티슬라바 성(Bratislava Castle)

도시명	브라티슬라바
-----	--------

주소	Bratislavsky Hrad, 811 06, Bratislava
운영시간	- 하절기(4월 1일~9월 30일) : 09:00~21:30 - 동절기(10월 1일~3월 31일) : 09:00~18:00
휴무일	매주 월요일
명소소개	- 브라티슬라바 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다뉴브강과 접하고 있음 9세기경에 대 모라비아 왕국의 요새로 세워졌으며 합스부르크 왕의 대관식이 치러진 곳으로 유명. 1761년에는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궁전으로도 사용 - 공산주의 시대에는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의 브라티슬라바 거처이자 슬로바키아 국회의사당으로 이용 - 현재 성 입구에 슬로바키아 국회가 자리 잡고 있음 - 해발 150m 가까이에 지어진 성이라 날이 좋으면 헝가리, 오스트리아 국경도 보임

◦ 성 마틴 대성당(St. Martin's Cathedral)

도시명	브라티슬라바
주소	Rudnayovo Namestie 1, 811 01, Bratislava
운영시간	- 월~금 : 09:00~11:30, 13:00~18:00 - 토요일 : 09:00~11:30 - 일요일 : 13:45~16:30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 성 마틴 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가 있던 자리에 1221년부터 건축하여 15세기에 고딕 양식 성당으로 완성 - 성당에는 15세기에 건축된 고딕 양식의 성모 마리아 예배당과 18세기에 건축된 바로크 양식의 사도 요한 예배당이 있음 - 성 마틴 성당은 브라티슬라바가 헝가리 왕국의 수도였던 1563년에서 1830년에 걸쳐 19명의 헝가리 왕과 여왕들이 대관식 개최(마리아 테레지아 여제도 6월 25일 1741년에 오스트리아 여왕 및 헝가리 여왕으로서 성당에서 대관식을 가짐) - 베토벤의 '장엄미사'가 초연된 유서 깊은 성당

〈자료원 :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자체 조사〉

마. 식당

- 현지식당

◦ 플래그십 레스토랑(FLAGSHIP Restaurant)

도시명	브라티슬라바
전화번호	+421 917 927 673
주소	8, Namestie SNP, 811 02 Bratislava
가격	메인 요리 1인분 평균 10유로
영업시간	- 월~금 11:00~24:00 - 토 11:00~24:00 - 일 11:00~23:00

휴무일	없음
소개	슬로바키아의 전통음식과 식당 내에서 발효한 체코슬로바키아식 생맥주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15세기 건축양식 및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아우카페(Au café;)

도시명	브라티슬라바
전화번호	+421 903 902 362
주소	Tyršovo nábřeží, 851 01 Petralka
가격	메인 메뉴 15~20유로 수준
영업시간	11:00~23:30
휴무일	공휴일 외 연중무휴
소개	이탈리아 음식 및 슬로바키아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레스토랑으로 다뉴브 강(헝가리어 뉘나이 강)가에 위치한 대형 레스토랑

<자료원 :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자체 조사>

- 한국식당

○ 매화(Maehwa Sushi Restaurant)

도시명	브라티슬라바
전화번호	+421 903 024 903
주소	Zlate piesky-areál Bratislava, Cesta na Senec 12, 831 01 Bratislava
가격	비빔밥 12유로, 김치찌개 14유로 수준
영업시간	○ 월~금 11:00~22:00 ○ 토 11:00~22:00 ○ 일 11:00~21:00 (15:00~17:00 휴점시간)
휴무일	없음
소개	수도 브라티슬라바 내의 유일한 한식당으로 시내 중심가에서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으로는 이용이 불편하나 넓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다.

○ YUMYUM(얌얌)(YumYum Korean Food)

도시명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주소	Obchodná; 511/10, 811 06 Bratislava
가격	1인분 기준 7~10유로대
영업시간	월-금 : 11:30-18:00

휴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소개	라면, 잡채, 떡볶이, 비빔밥 등 단품위주의 1인분 식사 판매
비고	yumyumkoreanfood@gmail.com

○ 호텔 비담(Hotel Vidam)

도시명	질리나(Zilina)
전화번호	+421 917 843 588
주소	Kamenn´ 2822/5, 010 01 ilina
가격	점심 메뉴 10유로 수준
영업시간	11:00~22:00
휴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소개	호텔 내에 위치한 한국 식당으로 점심메뉴(매일 변경)를 제공한다.

〈자료원 :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자체 조사〉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라디송블루 칼튼 호텔(Radisson Blu Carlton Bratislava)

도시명	브라티슬라바
주소	Hviezdoslavovo namestie 185/3, 811 02 Bratislava
전화번호	+421 2 5939 0500
홈페이지	https://www.radissonblu.com/en/hotel-bratislava
숙박료	숙박일 및 객실 등급별로 상이하나 1박에 130유로 수준
소개	브라티슬라바 시내 중심가에 위치(구 국립극장과 미국 대사관 사이에 위치)한 4성급 호텔로 전통적인 건축물에 위치하고 있다. 객실요율 대비 한국 여행객의 만족도가 높은 호텔.

○ 크라운플라자 호텔(Crowne Plaza Bratislava)

도시명	브라티슬라바
주소	Hodzovo namestie 2, 816 25 Bratislava
전화번호	+421 2 5934 8111
홈페이지	https://cpbratislava.sk/

숙박료	숙박일 및 객실 등급별로 상이하나 1박에 120유로 수준
소개	브라티슬라바 대통령궁 맞은편에 위치하여 주요 도로로의 접근성이 높은 4성급 호텔로 전통적인 건축물에 위치하고 있다. 투숙객용 스파, 수영장 및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다.

◦ 호텔 데빈(Hotel Devin)

도시명	브라티슬라바
주소	Riena 162, 811 02 Bratislava
전화번호	+421-2-599-851-11
홈페이지	https://hoteldevin.sk/
숙박료	숙박일 및 객실 등급별로 상이하나 스탠다드룸 1박에 90유로 수준
소개	브라티슬라바 시를 가로지르는 다뉴브강(헝가리어 두나이 Dunaj)가에 위치한 호텔로 역사깊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에서 접근성이 좋은 호텔이다.

〈자료원 :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자체 조사〉

- 게스트하우스

◦ 와일드엘레펀트호스텔(Wild Elephants Hostel)

도시명	Bratislava
주소	Františkánske námestie 8, second floor
전화번호	+421 0908 172 695
홈페이지	http://elephants.sk/
숙박료	기숙사형 침대 1개당 36유로
소개	◦ 브라티슬라바의 구시가지에 위치함. 중앙 광장, 성 마틴 대성당, 영장류 궁전 등의 인기 명소에서 가까움 ◦ 주요 거리는 브라티슬라바 성에서 700m, UFO 전망대에서 900m, 인체바 전시장에서 2.2km 거리에 위치 ◦ 공용 욕실과 도시 전망을 제공
비고	◦ booking.com 기준 평점 8.5로 매우 좋음으로 평가 받음(22년 5월 기준)

〈자료원 :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자체 조사〉

사. 치안

치안상황

슬로바키아는 주변국인 오스트리아나 체코에 비해 관광객이 적은 편이고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나라지만 인적이 드문 곳이나 밤길을 홀로 걷는 것은 안전상 주의해야 한다. 삼성, 기아 등 국내 대기업들의 진출로 인해 한국인들은 돈이 많다는 인식이 있으므로 가방 및 소지품 절도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브라티슬라바 구시가지 광장 및 식당, Tesco 등 대형마트, 기차나 버스 정류장 등에서 소매치기 및 도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치안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사람들이 붐비는 관광지, 관광객이 붐비는 식당, 백화점, 지하철 등에서 귀중품을 소매치기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여권 등 귀중품은 호텔의 금고(Safety Box)에 보관하고 사본을 휴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날 쓸 만큼의 돈만 소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야간에 시내 주요 관광지 이외의 외곽지역 출입 시 주의를 요하므로 가급적 시 외곽지역의 방문을 삼갈 것을 권장한다.

경찰은 인력, 자원, 장비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다. 지역경찰은 영어를 할 줄 모른다. 영어권 방문자들, 특히 여행자, 학생과 같은 당기 방문객들은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길거리 범죄의 표적이 된다. 길거리 범죄는 주로 폭력성이 없다. 범죄 대부분의 공통점은 소매치기, 핸드폰, 가방, 지갑 도둑이며 특히 여름철에 많이 보고된다.

외국 사람들이 신고하는 대부분의 도둑질은 붐비는 관광지(브라티슬라바 구시가지와 같은 곳)에서 일어나거나 공공버스, 트램, 지하철에서 일어난다. 슬로바키아의 도둑들은 주로 그룹이나 쌍을 이루어 작업한다. 대부분은 한 도둑은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다른 사람은 훔친다. 또 다른 사람은 공범자 근처에서 훔친 물건을 전달받는다. 길거리의 어린아이들은 관광객들의 시선을 돌려서 그들 중 한 명이 관광객이 한눈파는 동안 소매치기를 할 수 있게 한다.

만약 해외에서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면 반드시 경찰서와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야 한다. 경찰은 폭행이나 강간 등의 폭력범죄의 경우 적절한 병원치료를 위한 도움을 주며,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을 돕거나 범죄 해결 과정에 대해 이해하도록 변호사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준다.

슬로바키아의 긴급전화는 112이며, 영어가 가능한 상담원이 있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이 슬로바키아 또는 EU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 응급 출동 서비스에 전화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각 보험사가 제공하므로 보험 제공사에 먼저 문의하고 응급서비스(24시간) 전화번호는 차량에 상시 휴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긴급 구조대(Emergency) : 112 (EU 내 공통번호)
- 경찰(Police) : 158
- City police : 159

2) 여권/지갑 분실

여권 분실은 주슬로바키아 한국대사관에 연락하여 분실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주 슬로바키아 한국대사관 주소 : trova 16, 811 02 Bratislava, Slovak Republic
- 연락처 : (전화) + 421 (0) 2 3307 0711, (팩스) + 421 (0) 2 3307 0730/31, (이메일) slovakia@mofa.go.kr
- 근무시간 외 당직 연락처 : +421 (0)904 934 053 / +421 (0)911 743 124

3) 응급 전화번호

- 긴급 구조대(Emergency) : 112 (EU 내 공통번호)
- 소방서(Fire brigade) : 150
- 구급차(Ambulance) : 155
- 전화번호 문의 : 1181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 브라티슬라바 시내 임차 주택 공급물량은 최근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많아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서 임차료 수준은 슬로바키아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비싼 편이다. 계약은 현지 부동산 소개소를 통해 임차인이 직접 체결하며 계약 시 비용 부담 조항은 반드시 확인하고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주 시 가스, 전기, 수도 등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입주 후 이른 시일 내에(보통 1주일 정도) 부동산 소개소를 통해 수리를 요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이 모든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약 종료 시 파손에 대한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며, 이는 계약서에도 모두 명시되어 있다.

◦ 주택에 따라 (partially) furnished, unfurnished로 구분되며 가격의 차이가 크다. 화재, 도난, 개인재산(유리창 보험 포함) 등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가입기간,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임을 유념해야 한다.

부동산 업체는 매물 소개 및 방문을 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 시 계약서 작성 및 집주인과의 협상을 지원한다. 현지 법상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1개월의 월세 또는 그 절반을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사전에 협상 가능하다.

◦ 주택 임차 시 전기, 수도, 온수, 가스 등의 유틸리티 비용은 매월 정액으로 납부하고 연 1~2회에 걸쳐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때 실제로 사용한 양이 기납부 금액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 적은 경우 환급 절차를 집주인과 하게 되므로, 실제로 사용한 전기나 수도의 미터기와 청구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외국인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PERGO(<http://pergo.sk/>), Expat Experts(<https://expat.sk/>) 등이 있으며,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부동산 거래 포털은 Nehuntelnosti(<https://www.nehnutelnosti.sk/>), Top Reality(<https://www.topreality.sk/>) 등이 있다.

전화

유선전화는 지역별 공급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계약 및 설치를 진행해야 한다. 브라티슬라바 지역은 VNET Fiber a.s.라는 회사(<https://www.vnetfiber.com/>)가 공급하고 있다.

전압/플러그

◦ 슬로바키아는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E 타입의 전원 플러그를 사용한다. 표준 전압은 230v, 표준 진동수는 50Hz로 한국의 C, F 타입(표준전압 220v, 표준 진동수 60Hz)과는 대부분 호환되나 슬로바키아의 전원플러그 쪽이 미세하게 얇아 결합이 어려운 플러그가 있을 수 있으며, 전동모터를 포함한 전자기기는 표준 진동수 차이로 인해 모터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지만, PC, Laptop은 한국산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 가전제품은 유럽형 소켓을 사용, 한국에서 쓰는 플러그를 대부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접지되어있는 플러그여야 하며, 원형 플러그는 접지 단자가 없어 별도 소켓 구매가 필요하다.

식수

◦ 슬로바키아의 상수도는 마시기에 부담이 없으며 현지인은 대부분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식수로 이용한다. 다만 다른 유럽 대륙국가와 마찬가지로 상수도에 석회 물질이 많아 외국인의 경우 필터 정수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 생수(미네랄 워터)의 경우 슬로바키아가 산악지형이 많아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편이다. 보통 1.5리터 생수 한 병을 슈퍼마켓에서 1유로 수준에 구매할 수 있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 슬로바키아 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완성차 브랜드는 Motocar, Autopolis, BOAT, Autopalace 등의 딜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각 딜러에 연락하여 시간 약속을 잡은 후 딜러와 상의해 차량 구매 및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차 구입의 경우, 주문 후 생산되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대기기간이 발생하며 차량 등록까지 완료한 후 구매한 차량을 받을 수 있다.

○ 슬로바키아 내 주요 차량 브랜드 딜러십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 현대자동차: <https://www.autopolis.sk/sk>
- 기아자동차: <https://www.kia.com/sk/domov/>
- VW, SEAT, Skoda: <http://www.boat.sk/>
- BMW: <https://www.autopalacebratislava.sk/>
- Mercedes Benz: <https://www.mercedes-benz.sk/>
- Porsche: <https://porsche.sk/>
- AUDI: <https://www.audibratislava.sk/>
- Jaguar LandRover: <https://bratislava.landrover.sk/>

차량가격

슬로바키아 내의 차량 가격은 신차와 동일 모델 기준으로 한국보다 비싼 편이다. 이는 20%의 부가세와 엔진의 출력을 기준으로 등록세가 부과되는 슬로바키아 부의 세금의 영향을 받은 이유이다. 슬로바키아 내의 차량 등록세는 차량의 출력에 비례해 구간별로 매겨지며 차량 보험은 의무보험, 종합보험 모두 차량의 잔존가치와 차량 엔진의 출력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다만 2021년부터 지속되는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생산에 영향을 받아 리드타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중고차 가격이 20% 이상 상승했음

운전면허 취득

슬로바키아는 한국과 운전면허증 교환 협정 체결국으로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업무는 주 슬로바키아 대사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공증(체류허가 취득 즉시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 접수장소: 주 슬로바키아 한국 대사관
- 필요서류: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여권
- 비용: 3.20유로
- 소요시간: 30분 이내
- 운전면허 번역공증 신청 시 재외국민 등록 신청을 함께함.

이후 슬로바키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신청(한국 운전면허증 번역공증 후 2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 접수장소: 주소지 관할 운전면허 발급기관
- 필요서류: 체류허가증, 운전면허 번역공증문,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여권
- 비용: 6.50유로 상당의 인지(2일 내 빠른 처리를 원할 경우 24유로)
- 소요기간: 2~3주
- 관할 운전면허 발급기관을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함.

- 슬로바키아 운전면허증 수령 시 본인의 한국 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 발급기관에 제출함.

제출한 날로부터 통상 3개월 후부터 주 슬로바키아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 수령 가능하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TATRA Banka
 - 주소: Vysok 6785/1, 811 06 Bratislava
 - 홈페이지: tatrabanka.sk
- VUB Banka
 - 주소: Prikova 170/2, 821 09 Bratislava
 - 홈페이지: vub.sk
- Slovenska Sporitelna
 - 주소: Obchodn 52, 811 06 Bratislava
 - 홈페이지: slsp.sk
- CSOB
 - 주소: Pribinova 8, Eurovea, 815 63 Bratislava
 - 홈페이지: <https://www.csob.sk/individualni-klienti>

계좌 개설방법

○ 개인 계좌 개설

개인 계좌는 현지 비자 발급과 상관없이 개설할 수 있다. 계좌 개설에 필요한 것은 여권 및 국내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비자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기본증명서 등 국내 주소지가 표기된 서류의 영문 번역 후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를 이용하거나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운전면허증을 주 슬로바키아 한국 대사관에서 영문 번역 영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서류를 이용할 수 있다. 여권과 국내 주소지가 표기된 서류(영문 번역 후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계좌개설을 해 사용할 수 있다.

○ 기업 계좌 개설

기업 계좌 발급 시 필요서류는 기업 등록증(Extract from the Business Register)과 대표자 여권사본이다. 대표이사(법인장)외 계좌 이용 시 사용할 서명을 등록하고자 하는 직원(CFO 등)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여권 사본도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Know Your Customer(KYC) 제도 때문에 국내에 본사가 있는 경우 본사의 주요 주주 내역 등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내에 본사가 없는 경우에는 현지 설립된 기업의 주주 사항만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기입해 제출하면 된다.

○ 개인 대출

개인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의 장기비자를 소지한 개인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단기 비자 소지자는 대출이 제한된다. 장기비자를 소지한 개인은 슬로바키아 내 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 등을 이용해 아파트 등 주택 구매를 할 수 있다. 주택담보 대출은 구입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모기지론의 최장 기간은 30년이며 대출기간은 신청자의 나이에 따라 변동된다. 대출가능 연령은 65세까지로 만약 신청자가 50세이면 대출가능 기간은 최장 15년이다. 35세 이하의 신청자가 최대 30년까지의 대출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가능 금액은 구입가격의 80%와 월 대출 분할 상환금액이 월 소득(급여)의 50% 이하로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금액이 산정된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금액이 10만 유로이면 최대 대출가능 금액은 8만 유로이고 대출기간이 10년

인 경우 월 분할 상환 금액은 (원금 및 이자) 약 700유로이다. 이 경우 월수입이 1,400유로 이상일 경우 8만 유로 대출이 가능하다. 즉 담보인정비율 80% 및 월 소득금액이 대출 산정의 주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적용되는 평균 대출금리는 연 1.25% 수준이고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하면 시중금리 상황에 따라 대출금리가 재산정된다.

◦ 기업 대출

기업 대출은 운전자금대출(Working Capital Loan)과 시설자금대출(Investment Loan)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비 및 차량 운반구 등을 구입하는 용도로 Leasing을 이용할 수 있다. 기업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자료는 최근 감사보고서 및 국내에 본사가 있는 경우 본사의 최근 감사보고서(영문), 주요 사업내용 및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출 심사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현금창출능력 평가의 주요 지표인 EBITDA이다. 즉 세금 및 감가상각 전 이익 금액이 대출 심사 시 승인 여부를 평가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다.

◦ 운전자금대출

운전자금대출은 통상 1년 단위로 기한이 설정되고 만기 도래 시 기한 연장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운전자금대출은 일시에 필요자금을 대출받는 Term Loan, 국내의 마이너스 통장과 같이 한도를 설정해 필요 시 자금을 인출해 사용하는 Over Draft가 있다. 또한, 우량 거래처 앞 제품·상품 판매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A/R)을 할인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Factoring이 있다.

◦ 시설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은 공장건설, 설비도입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용도로 신청해 이용하는 것으로 대출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정해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고정자산을 취득하기까지 기간 및 해당 자산으로 매출을 최초 발생시키는 기간을 합한 기간이 대출 후 이자만을 납부하고 원금 상환은 유예되는 거치기간(Grace Period)이다. 거치기간은 해당 사업의 수익에 따라 산정된 분할상환 기간과 합산돼 총대출 기간이 산정된다. 시설자금대출 신청 시 관련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통상 담보인정비율은 평가 금액의 80% 수준이다. 슬로바키아도 국내와 동일하게 감정평가기관이 있고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금액을 근거로 부동산 담보 대출 및 매매 등에 활용하고 있다.

◦ 리스(Leasing)

기계류, 차량 운반구 등을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구매가격의 최대 90%까지 리스할 수 있으며, 일반 대출과 동일하게 신청 기업의 신용등급 등 산정 후 신용등급이 다소 불량할 경우 리스 금액은 구입가격의 60~70%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다. 리스의 통상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Bratislava(BISB)

도시명	브라티슬라바
커리큘럼	설립연도: 1997년(슬로바키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 학교) 교육과정: 3~19세 사이, 캠브리지 IGCSE 공개 시험 실시 졸업생: 영국 옥스퍼드/케임브리지 대학의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및 아시아의 다른 최고 대학교의 졸업생들도 포함. 교육 언어: 영어(슬로바키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한국어/중국어 모국어 개발 지원 프로그램 있음) 글로벌: 전 세계 27개 학교를 보유, 4개 대륙의 Nord Anglia Education 그룹 소속
학비	학년별 상이하나 연간 15,000유로~20,000유로 수준
홈페이지	https://www.nordangliaeducation.com/our-schools/bratislava

○ QSI International School of Bratislava

도시명	브라티슬라바
커리큘럼	교육 과정: 2~18세, 사립 비영리 교육기관 교육 언어: 영어(슬로바키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개발 지원 프로그램 있음)
학비	학년별 상이하나 연간 15,000유로~20,000유로 수준
홈페이지	http://www.qsi.org/bratislava/

<자료원 :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자체 조사>

- 현지학교

○ Deutsche Schule Bratislava`

도시명	브라티슬라바
커리큘럼	홈페이지 참고
학비	홈페이지 참고
홈페이지	http://www.deutscheschule.sk/
비고	주소 : Palisdy 730/51, 811 06 Staré Mesto

<자료원 :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자체 조사>

마. 병원

○ Clinic Kramare(끄라마레 종합병원)

도시명	브라티슬라바
주소	Limbova 5, Bratislava
전화번호	+421 2 5954 1111
진료과목	종합병원

○ Clinic Ruinov(뤼즈노브 종합병원)

도시명	브라티슬라바
주소	Ruinovska 10, Bratislava
전화번호	+421 2 4823 4113
진료과목	종합병원

<자료원 :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자체 조사>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Eurovea Galleria

도시명	브라티슬라바
주소	Pribinova 1/B, 811 09 Bratislava
홈페이지	https://eurovea.sk/
비고	브라티슬라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쇼핑몰로 웨라톤 호텔, 영화관, 슈퍼마켓, 상점, 강변 레스토랑, 아파트 등이 밀집된 공간

○ Aupark

도시명	브라티슬라바
주소	Einsteinova ul.18, 851 01, Bratislava
홈페이지	https://www.aupark-bratislava.sk/
비고	2016년에 오픈한 브라티슬라바 내 최대 쇼핑몰로 Eurovea에서 강 건너 남쪽에 위치

○ AVION Shopping Park

도시명	브라티슬라바
주소	Ivanska cesta 16, 821 04
홈페이지	https://www.avion.sk/
비고	브라티슬라바공항 인근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로 가구상점 및 이케아와 인접해 있음.

〈자료원 :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자체 조사〉

- 식품점

○ Arirang Market(아리랑)

도시명	브라티슬라바
주소	Cesta na Senec 12, 831 01 Bratislava
취급 식료품	한국, 일본 및 중국 식품
비고	브라티슬라바 시내의 유일한 한국식료품 전문 판매점

〈자료원 :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자체 조사〉

- 기타 편의시설

o RAI-International 렌터카

도시명	브라티슬라바
주소	Airport M.R. Štefánika, Bratislava
홈페이지	http://www.rai.sk
소개	브라티슬라바공항에 위치한 렌터카 업체

<자료원 : <http://www.rai.sk>>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시작일	종료일
슬로바키아 건국기념일	2023-01-01	2023-01-01
한글날	2023-10-09	2023-10-09
삼일절	2023-03-01	2023-03-01
성(聖) 금요일	2023-04-07	2023-04-07
부활절	2023-04-10	2023-04-10
근로자의 날	2023-05-01	2023-05-01
전승기념일	2023-05-08	2023-05-08
기독교 선교기념일	2023-07-05	2023-07-05
혁명기념일	2023-08-29	2023-08-29
제헌절	2023-09-01	2023-09-01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2023-09-15	2023-09-15
만성절	2023-11-01	2023-11-01
벨벳혁명기념일	2023-11-17	2023-11-17
크리스마스 연휴	2023-12-26	2023-12-24
광복절	2023-08-15	2023-08-15
개천절	2023-10-03	2023-10-03
주현절	2023-01-06	2023-01-06

<자료원 : <https://www.timeanddate.com/>>

10. KOTRA 무역관 안내

◦ KOTRA 브라티슬라바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대표 전화 : +421-2-2129-3450
- 대표 이메일 : bts_ktc@kotra.or.kr
- 홈페이지 : <http://www.kotra.or.kr/KBC/bratislava/KTMIUI010M.html>
- 주소 : Cintorinska 2333/9, 811 08, Bratislava, Slovak Republic

공항-무역관 이동

◦ 공항 택시 이용

- 비엔나 공항에서 KOTRA브라티슬라바 무역관으로 이동하는 편도 택시 비용은 약 90~130유로이며, 소요시간은 약 50분 내외이다.
- 브라티슬라바 공항에서 KOTRA브라티슬라바 무역관으로 이동하는 편도 택시 비용은 약 10~20유로이며, 소요시간은 15분 내외이다

◦ 대중교통(버스) 이용

- 비엔나 공항 :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Autobusov stanica Mlynské nivy 버스정류장에 하차 가능(약 1시간 소요, 5유로, 성인 26~59세 기준). 브라티슬라바 무역관은 버스정류장에서 202, 205번(Rajska 정류장 하차), 208번(Cintorinska 정류장 하차) 버스로 찾아올 수 있다. 비엔나공항-브라티슬라바 고속버스 노선 서비스 제공업체는 Slovak Lines(<http://www.slovaklines.sk/>), Regio Jet(<https://www.regiojet.sk/>), Flix Bus(<https://www.flixbus.sk/>) 총 3개사가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다.
- 브라티슬라바 공항 : 시내버스 61번 또는 96번을 이용해 시내에서 하차하여 도보 또는 트램으로 브라티슬라바 무역관에 올 수 있으며 소요시간은 약 40분 내외이다.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